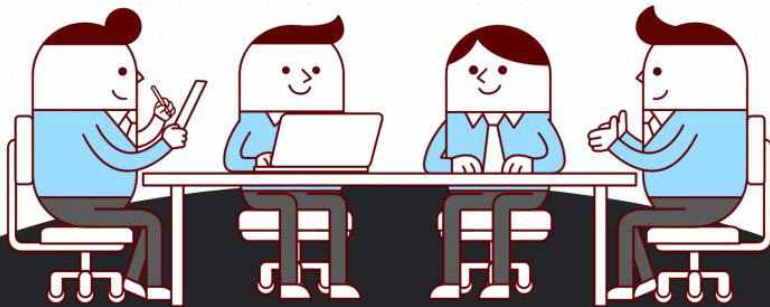


경남 사회적 경제 조직들 조합원 워크숍

2019. 8. 23 (15시) - 2019. 8. 24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자!

“

-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조달 조직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

장 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550-25
(황산리 853) 하나온

주 최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주 관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참 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세션 1

경남의 사회적 금융 법인 설치를 위한 논의

발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익활동가기금 동행

세션 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진행 논의

발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진행 현황 - 정원각
발표: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진행 현황

경남 사회적경제 조직들 조합원 워크숍

“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조달 조직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

1. 과정과 배경

- 1)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에서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조직 형태를 구체적으로 논의함.
- 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경남에 소매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을 논의 하던 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상호부조의 안이 나옴.
- 3) 이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을 초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함.
- 4)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경남의 활동가들과 함께 교류와 논의할 것을 제안함.
- 5) 이에 행사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하고 주최를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하고 주관을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하기로 함.
- 6)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일부 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함.

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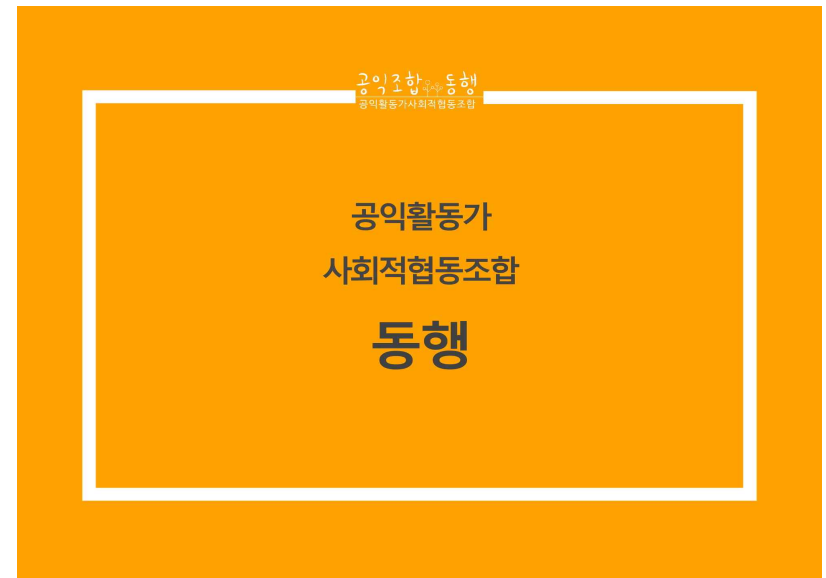
- 1)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공급을 할 사업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
- 2)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추진
- 3) 경남과 전북에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의 본질과 역할, 미션 등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깊게 함.
- 4) 경남과 전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방향, 지역 순환경제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연대의 가능성 점검.

[목 차]

동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호부조, 소액대출 등에 대하여 서여진 사무처장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06
사회적금융 지역증개관 추진방안 장지연 실장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19
경남사회적혁신타운에 대하여 정원각 상임이사(경남사회연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41
덧붙임 1.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설문 조사 결과	64
덧붙임 2. iCOOP생협은.....구례에 클러스터를 만드는가?	72
부록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정관, 규정 중에서 상호부조, 소액대출 부분만	80

■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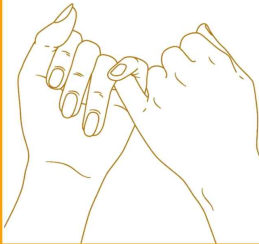
15:00~15:15	참석자 소개와 인사, 회장님 인사
15:15~18:00	[발제와 토론] 경남의 사회적금융 법인 설치를 위한 논의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발제와 토론] 경남과 전북 인사와 함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진행 논의
20:30~	교류의 시간



동행의 시작

2010년, 한 활동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 보험은 커녕 4대 보험도 없었던 아빠 뒤에 남겨진 두 아이.
약간의 모금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시민사회.

긴 슬픔의 시간을 보냈고,
활동가들은 스스로 돕고 지원하는 활동가 안전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 4월 '동행'이 창립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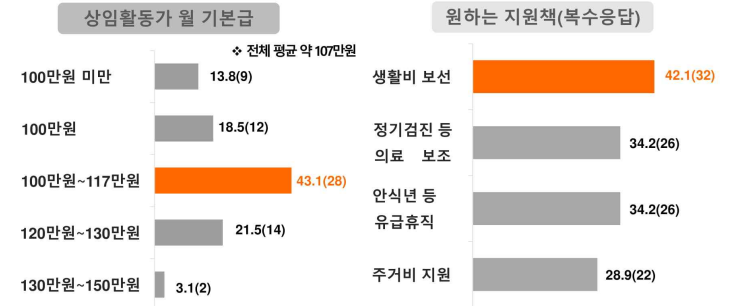


저임금과 과로, 전망 부재 속에서 떠나는 활동가들,
'동행'은 활동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과 치유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행'은 공익활동가의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활동가의 품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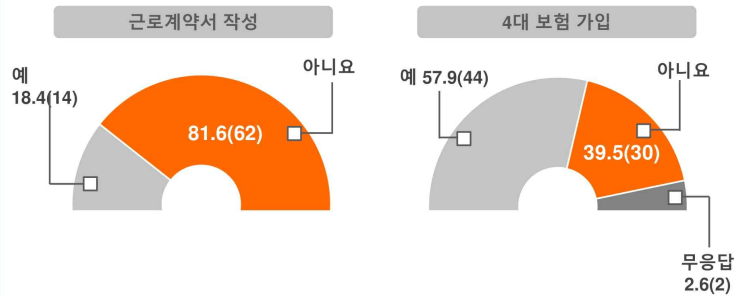
➤ 2015년 인권활동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본
금 107만원, 42%가 생활비 보전의 경제적 지원책 요구



활동가의 현실

➤ 2015년 인권활동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
서 작성은 20% 미만, 4대보험 가입률은 57.9%

인권활동가 생활 실태 자료: 인권재단 사람, 인권단체 41곳, 유급활동가 76명(단위% 괄호안은 명)



설립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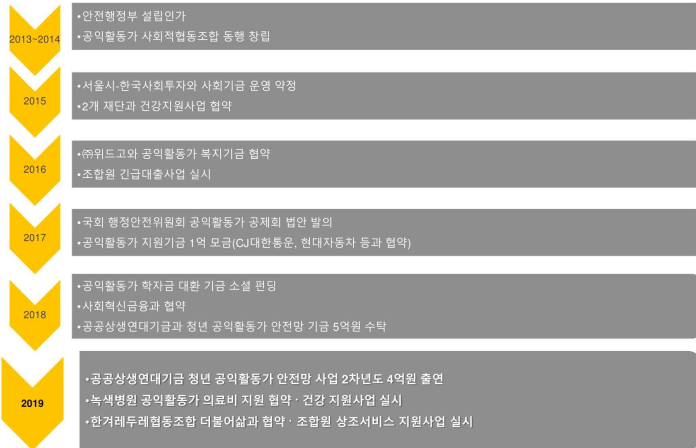
원칙

- 스스로 협동하는 공익활동가
- 사회와 소통하는 공익활동가
- 당당히 책임지는 공익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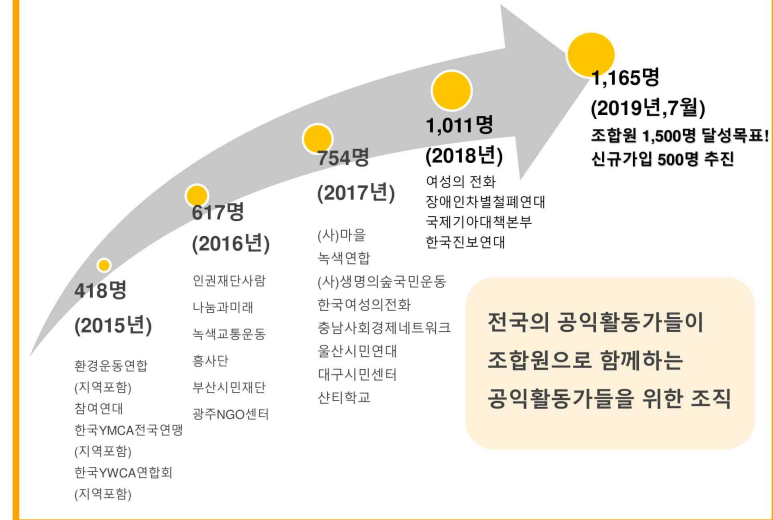
목표

- 공익활동가 상부상조 문화 조성
- 공익활동가 안전망 구축
-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
-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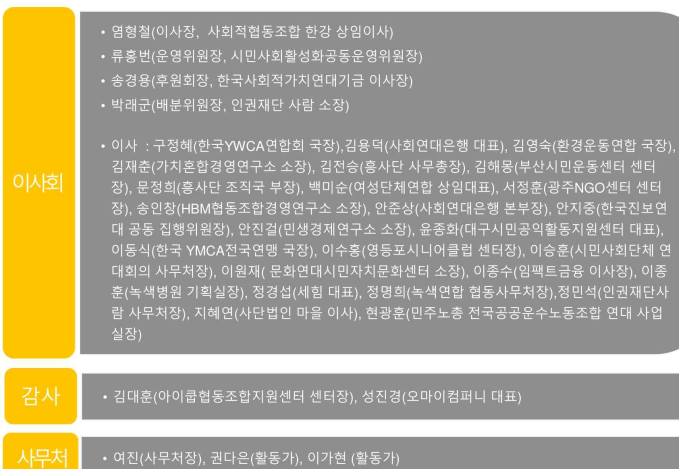
연혁



조합원 현황



동행 조직



주요사업



재무 현황

재무상태

자산	929,726,504원(2018년 기준)
자본	721,602,950원(조합원 출자금 1억9천, 외부 출연 5억 포함)
부채	208,123,554원, 대출기금 2억 포함

실적

구분	인원(명)	지원금액
상호부조사업	73명	93,520,000
긴급자금대출사업, 소액대출 사업	47명	300,000,000
청년안전망사업	57명	668,000,000
재충전지원사업	112명	75,000,000
의료비 지원사업	163명	50,000,000
학자금지원사업	50명	40,000,000
응원사업	1,438회	호텔무료숙박원, 영화티켓, 외식상품권 등

상호부조 현황

항목	금액	2015년	2016년	2018년	2018년
결혼 이혼	20만원		80만원 (4인)	320만원 (6인)	160만원 (8인)
출산	50만원		200만원 (4인)	450만원 (9인)	650만원 (13인)
사망	최고 3,000만원		1,000만원 (1인)		3,000만원 (1인)
암진단	최고 500만원			3,000만원 (3인)	1,700만원 (5인)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150만원 (1인)		180만원 (1인)	
중증장애	최고 500만원				110만원 (1인)
재활기간 중 지원					100만원 (1인)
총 합		150만원 (1인)	1,280만원 (9인)	1,750만원 (19인)	5,724만원 (29인)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상호복지증진을 위한
상호부조사업 운용

월 5천원 이상의
상호부조회비를 통한
경조사비 지원

조합원 가입이
6개월 이상인 자

◆ 상호부조사업 내용

항목	지급액
결혼·이혼	20만원
출산	50만원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장애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본인)	최고 150만원
재활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 생계비 110% 지원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경제적안정망



긴급상황 및 경제적 위기
생활안정 지원

출자금 및 외부협약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조합원에게
1~3%저리 대출

조합원 가입이
2개월~36개월 이상인 자

◆ 경제적 안전망 기금사업 내용

소액대출사업	공공상생연대기금 청년활동가 안전망사업	공익활동가 안전망 든든기금
조합원가입이 24개월이상인자	조합원가입이 2개월이상인자	조합원가입이 3개월이상인자
1인 최대 1천만원	1인 최대 2천만원	1인 최대 2천만원
연3%	연1%	연1%
최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최대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최대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2천만원	5억원	6억원
출자금	공공상생연대기금	조성예정

공공상생연대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

- 목적** 고이율 학자금 전환대출, 생활안정지원 대출을 통해 원금 상환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
- 내용** 1인당 최대 2천만원, 최대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 금리** 연 1%
- 용도** 긴급생활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 의료비 등
- 대출 자격**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공익활동가로서 동행 조합원 가입 2개월 이상인 자



재충전 지원



공익활동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 지원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내·외
여행 경비 지원

조합원 가입이
3개월 이상인 자

◆ 재충전지원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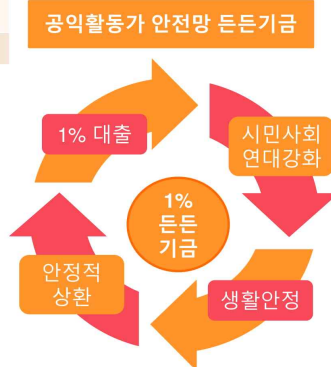
재충전 자유	재충전 기획
활동가 스스로 기획한 여행프로그램	동행이 기획한 여행프로그램
국내·외 여행경비 지원	국내 여행프로그램 지원
개인 및 조합원팀	조합원30명 신청·접수
개인 85만원씩, 35명 조합원팀 200만원씩, 10팀	1팀, 1천만원이내
4월 12일~5월 10일 공모	7월 공모 예정
5천만원	1천만원
현대자동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행 자체 기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대출 기금 운용 현황(2018년 12월 기준)

구분	인원(명)	지원금액(원)
소액대출사업	8명	50,000,000
긴급자금대출사업	44명	250,000,000
청년안전망 사업	42명	490,000,000

공익활동가 안전망 든든기금

- 경제적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안전망 부재
- 2000만원 이하 제 1금융권 신용대출 불가
연 이율 10~20% 고금리 이용, 생계 불안 가중, 경제적 위험 증폭
- 저소득층의 생계/ 대환대출 정부 지원
최대 3,000만원 지원, 연 9% 이율의 고금리 대출 제도로 경제적 부담 가중 지원 제도



재충전지원 현황

연도	내용	지원금액	지원처
2016년	개인 8명	10,000,000	동행 자체기금
2018년	개인(9명, 7백만원) 조합원팀(6팀, 8백만원)	15,000,000	동행 자체기금/ 현대자동차
2019년	개인(37명, 2천 9백만원)/ 조합원팀(11팀 2천만원)	50,000,000	현대자동차/ 사회복지공동모금

의료비 지원



공익활동가 건강권 지원

공익활동가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의료비 지원

동행 조합원 누구나

◆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녹색병원과 함께하는 2019년 의료 지원사업	2019년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입원수술비 지원 1인 최대 100만원	일반치료비, 검진비용, 비급여 초과치료비
정밀 종합검사 (145만원 상당) 본인부담 15만원	치료비 부담이 월 활동비 1/3이상인 조합원
비급여항목 10%할인 독감예방접종 30%할인	1인 최대 50만원 치료비 지원
상시 및 연2회 신청·접수	상시 신청·접수
조합원 누구나	조합원가입 6개월이상인자
2천만원	1천만원
녹색병원·동행 자체기금	동행 자체기금

활동가응원사업



공익활동가의 활동을 격려
하고 지지하는 응원사업

공익활동을 응원하는 차원
에서 가입·생일 시 또는
이벤트를 통한 선물 배포

동행 조합원 누구나

◆ 힘내라, 활동가! 응원사업

활동가 응원 영화티켓 배포	동행조합원 응원·선물 지원	무료숙박권지원
조합원 가입시	조합원 생일시	이벤트 지원시
CGV 영화티켓 배포 (1인 2매)	외식상품권 배포 전시·공연티켓배포	호텔·콘도 무료 숙박권(최대2박)
CJ 대한통운	국수나무 및 기타	강원랜드

학자금 지원



공익활동가의 학습권 보장

공익활동가의 학업을 격려하며
학비 경감을 위한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동행 조합원 누구나

◆ 학자금 지원사업 내용

본인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조합원 본인	조합원 자녀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중등 자녀 1인 최대 30만원 지원 고등 자녀 1인 최대 50만원 지원 대학생 자녀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연 1회, 6~7월 공모 예정	연 1회, 6~7월 공모 예정
연 1천만원	
교원공제 지정기탁	

상조서비스 지원



조합원 경조 발생 시
장례 서비스 지원

공익활동가의 경조 시에
발생하는 장례비용 경감 및
장례 서비스 지원

동행 조합원 누구나

◆ 조합원 상조서비스 지원 내용

조합원 상조서비스
조합원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상조 시
동행 조합원 전용 상품 이용 및 10%할인
동행 조합원 전용-상품 A : 210만원 B: 270만원 C : 340만원 상품내용-인력지원,상복 및 의전용품, 장의차량, 꽃장식, 기타
상조발생시 동행 또는 더불어삶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장례절차 진행
2백만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더불어삶

동행이 커진다는 것

- 동행의 혜택을 받는 활동가가 늘어난다는 것
- 활동가의 직업만족도 증진, 시민사회 재생산



공익활동가 안전망 동행의 정착과 발전으로 당당한 활동가, 전문적인 단체활동, 믿음직한 시민사회 실현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동행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activistcoop.org>

감사합니다

사회적금융 지역중개기관 추진 방안

201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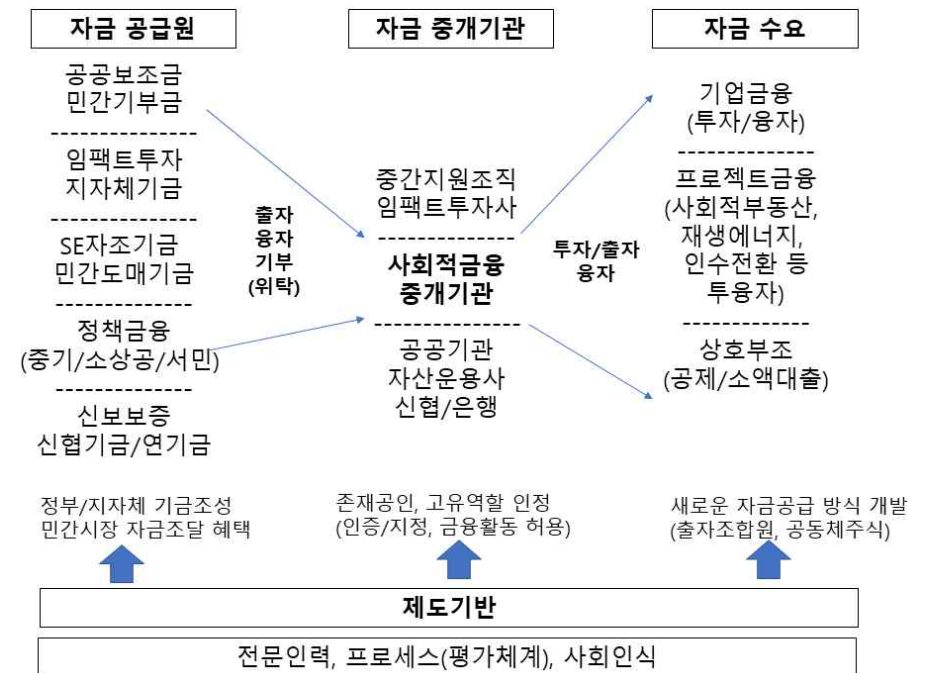
SM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1 사회적금융 환경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역할

- (기업금융)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투자, 융자 공급
- (프로젝트금융) 사회목적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공급
- (상호부조) 민간 자조기금 조성 및 공제·소액대출 운영

□ 사회적금융 환경 (생태계 요소 현황)



○ (수요) 사회적금융에 대한 현장조직 수요 (자금 수요, 프로젝트 계획)

- 기업금융: 융자, 투자 연간 평균 규모와 건수
- 프로젝트 금융: 도시재생, 자산화, 에너지, 기술개발 등
- 자조기금(공제): 지역/부문/업종 등 민간 자조기금 조성/운영

○ (공급) 수요에 대응하는 자금 공급원 중 중개기관이 접근 가능한 자원

- (자조기금) 회비/출자금/투자금 등 (사회적경제 조직)
- (기부금/후원금) 기업CSR(공기업, 민간기업), 개인후원금 등
- (민간기금) 사회적경제 도매기금 (사회가치연대기금)
- (지자체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 조례 기반)
- (정부기금)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소셜벤처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와 전문역량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협력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사회적경제 협의체, 선도기업 등)
- (전문역량) 금융서비스 공급 및 관리 역량, 재무 컨설팅 및 교육 역량, 사회적경제 자원연계 및 사업개발 역량
- (협력구조) 기존 지원 인프라와 협력관계 설정 (권역별 지원기관, 지자체 센터 등)

○ (제도기반 등)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 자금 공급원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금 마련)
- 비영리성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자금공급
- 전문인력 육성

- 업무처리 기준 마련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등)

2 추진 방향

○ 향후 인증제를 고려한 사회적금융기관 (중개기관) 기준 마련

- (사회적경제 정체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정체성 확인 가능한 요건 구비 - 소유구조, 지배구조, 이익배분 제한, 사회적목적 추구
- (금융 전담) 사회적금융을 주 업으로 하는 기관 (정관, 해당분야 활동 실적)
- (전문 역량) 전문인력 최소조건 (ex. 금융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 각 1인)
- (자본금) 최소자본금 최소조건 (ex. 지역단위 0.5억, 전국단위 1억)
- (법적구조) 제약 없음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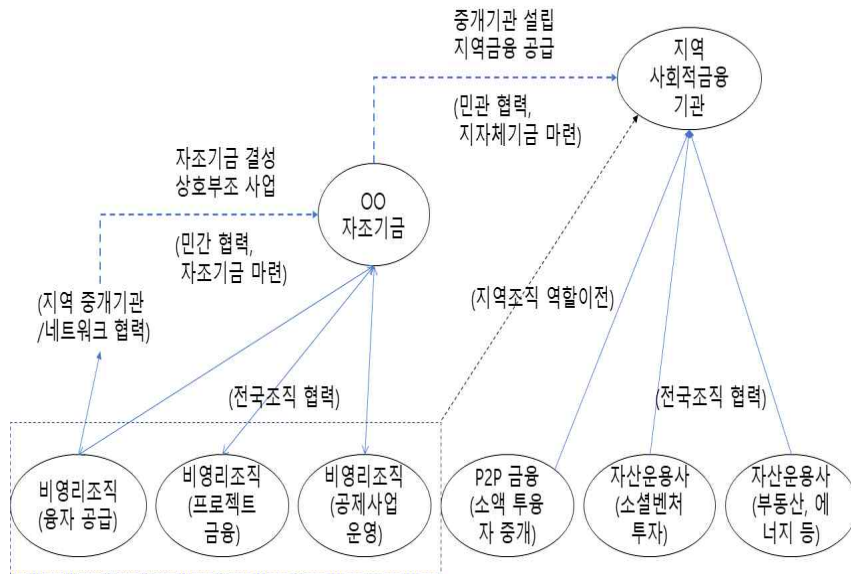
☞ 사회적가치연대기금 투융자 지원 대상 중개기관 선정기준에 적용

○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유형별 육성 및 공조 체계 구축

- (전국단위 전문기관)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금공급원을 대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 자본시장과 비영리섹터에 걸쳐 활동하고, 고유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사회적금융 지역생태계 조성 과제를 위해 협력하고, 지역 중개기관과 파트너십 구조 마련.
- (지역단위 중개기관) 광역 단위 민간 협력구조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사업에 복합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 사회적경제 주도성과 자율성 확보, 관계금융의 장점 실현

을 위해 지역 자조기금을 씨앗자금으로 출발. 지자체 기금의 사실상 전달체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 **(당사자 공제조직)** 기초/광역 단위 다양한 층위의 자조기금 결성 활성화. 회원 간 공제사업, 소액대출 등 자조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지역단위 중개기관에서 위탁운영



○ 단계 구분 (제도화 이전 이후로 구분)

- **(1기 - 예비단계)** 기존 금융관련 제도환경에서 사회적금융 실행 (~ 2021년) ***
- **(2기 - 본격화 단계)** 사회적금융 고유의 투융자 활동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개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통해 진행 (2022년 이후)

3 지역 중개기관 추진 고려사항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주요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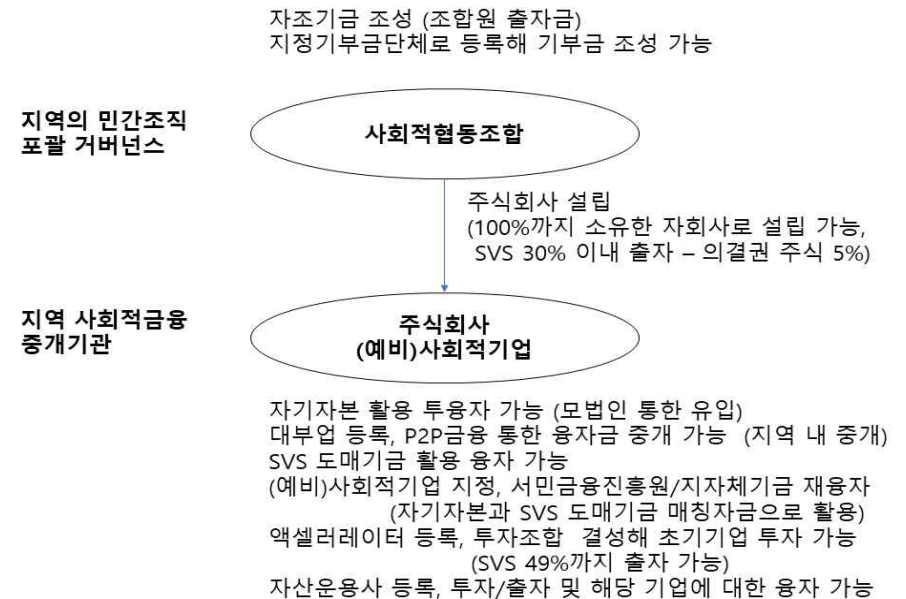
- **(관계금융)** 현장에 밀착된 풍부한 정보 획득, 사회적자본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조금융 구조 마련
- **(전문역량)** 사회적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조직, 전문가/최소자본 구비, 사회적금융 환경이 초기단계인 현실을 고려해 사업개발 및 자원연계 역량을 갖추고 개발금융으로서 역할 수행 (현 시기 사회적경제 현장의 부족한 역량을 메워줄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육성)
- **(사회적경제 정체성)** 사회목적 추구, 이해관계자 참여, 민주적 운영

○ 법적 구조에 따른 사업 내용

구분	내용
(1유형)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조직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운영 1) 자기자금 활용 투융자(자조기금/기부·출연금) 2) 정책자금 재융자(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기금) 3) SVS 도매기금 활용 투융자 4)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개인투자조합 운용 (3년 내 초기창업기업 투자) ※ 지자체기금법 개정 후, 지자체기금 위탁운영 가능하지만, 현재는 재융자 방식으로 사업
(2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틀 내 운영 1) 출자금 활용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공제사업 (출자금의 2/3 이내 조합원 대상 대출) 2) SVS 등 30% 수준으로 참여 가능한 출자자를 확보해 대출 규모 확대 3)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투자/출자 (SVS기금 활용) 4)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개인투자조합 운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비조합원 융자 불가, 서민금융진흥원 재융자 사업 참여 불가
(3유형) 주식회사 + (예비)사회적 기업	금융업 라이선스 보유, 대부업, 투자조합 결성/운용 1) 대부업 등록해 융자, P2P연계 대부업 (0.5억원) 2)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0.5억) 개인투자조합 운용 3) 자산운용사 등록해 투자조합 운용 (투자/융자) (7년 내 창업기업 1억, 전문투자 10억) ☞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 입증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고려해 소유/지배구조/정관 등 요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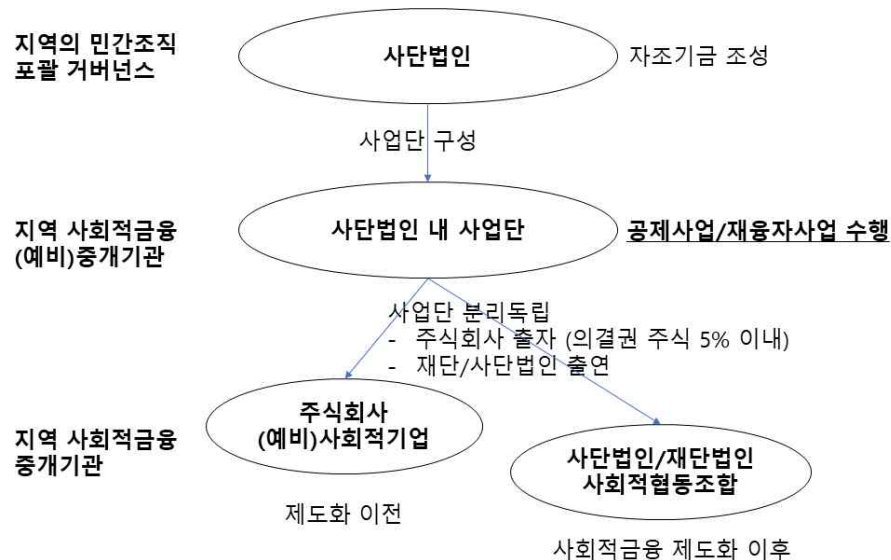
○ 이행 방안

- (경로1)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한 주식회사 설립



- (1) 사회적협동조합 자조기금 조성 (회원구성, 정관 등 정비)
- (2) 주식회사 자회사 설립 (지자체기금 조성 6~12개월 전)
 - 중개 가능한 재원 규모, 전문인력 결합가능 시점, 최소 운영비 확보 가능한 일감 수준을 고려
- (3) 자조기금+사회가치연대기금 자금으로 융자 실행
+ P2P 금융 방식으로 자금조달 중개 시작
(플랫폼은 비플러스 제휴 - 수수료 배분)
- (4) (3)번 업력을 기반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지자체기금/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 참여
+ 투자/프로젝트금융은 전국단위 중개기관 협력
- (5) 추후 성장 단계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자산운용사 등록

- (경로2) 사단법인 내 사업단으로 육성해 별도 조직으로 독립



- (1) 사단법인 자조기금 조성 (회원구성, 정관 등 정비)
- (2) 사단법인 내 사업단 구성 (지자체기금 조성 6~12개월 전)
 - 중개 가능한 자원 규모, 전문인력 결합가능 시점, 최소 운영비 확보 가능한 일감 수준을 고려
- (3) 자조기금+사회가치연대기금 자금으로 용자 실행 + 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 참여
- (4) (3)번 업력을 기반으로 지자체기금 수행기관 참여 + 투자/프로젝트금융은 전국단위 중개기관 협력
- (5)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설립 본격화 시기가
 - (가) 제도화 이전이면 주식회사,
 - (나) 제도화 이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재단법인/사단법인 선택
- 사회적협동조합: 출자 방식 회원모집 용이, 자회사 소유 가

능, 공제사업 구조 포용하기에 용이

. 재단법인: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외 지역공기업 등 출연 자확보가 가능하다면 재단법인

4 사회가치연대기금 협력 방안

○ 예비 단계

- 자조기금 활용한 소액대출/공제사업 운영 중개기관 협력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인력확보 및 교육, 지자체 협력 등 환경조성 활동

○ 설립 단계

- (자기자본 확충) 사회적금융 지역 중개기관 설립 시 30% 이내에서 자기자본 투자/출자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내)

○ 초기 가동 단계

- (도매기금 공급) 기업용자를 위한 도매기금 공급, 사회적금융 분야 활동 경력을 쌓아 서민금융진흥원/지자체기금 취급 가능하게 지원

○ 사업 본격화 단계

- (역량강화 지원) 공공 기금 취급 가능한 수준의 업무프로세스 구축 지원, 인력/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협력체계 구축) P2P금융 플랫폼, 임팩트프로젝트 투융자 등 전국단위 전문기관 협력 지원

○ 성장비전 모색

- 사회적금융기관 인증제 도입 과정에서 액셀러레이터에 준하는 사회적금융기관 제도기반 마련 (ex. 자본금 0.5~1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 보육공간 보유 - 창업 3년 내 초기기업 대상 투자 가능)

- **공제조합 제도화** 추진 주체와 협력
- **(임팩트 투자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창업벤처전문 PEF 운용사, 자본금 1억 이상, 창업 7년 내 기업 대상 투자 가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전문 PEF 운용사, 자본금 10억 이상)
- **(사회적 은행)** 신탁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출자금 3억원), 상호저축은행 (본점이 도에 있는 경우 자본금 40억 이상,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 이상) 등

※ 참고자료 1. 사회적금융·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18.2)에 제시된 계획과 비전 실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증제 도입: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과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인증요건 마련: 사회적금융 주 수행기관 뿐 아니라, 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 포함 (신기술사, VC, 신탁 등)
-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 참여 기회 부여: 공모사업 응모, 또는 스스로 사업 제안해 자금지원 요청
- 중개기관 역량강화 사업 추진: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 역량강화
- 미인증 중개기관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

- (1)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 '자금공급→매출액↑→자금회수→자금공급↑'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2)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1)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2) 투자대상 발굴, 3)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 사회가치기금은 객관·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 마련·추진
- (3)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 (4)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를 확충하고 신탁·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
 -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정부·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 실적 DB 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 (5)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 ☐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구축한 중개기관 DB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매년 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업데이트
-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
 -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탁 등
- 인증요건은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 ☐ 사회가치기금은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제

안하여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예시)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사회가치기금의 보충,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기금의 출자지원 등

- 사회가치기금은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인증 중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

*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재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이 중개기관을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 지원 중개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상 연계 강화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제시된 역할 구조 고려

-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재 3개 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은 윤호중의원 안과 구조와 내용상 일치
- (윤호중의원 안, '16.8 발의) 공공의 발전기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각기 조성해 배합, 투융자 및 지원 가능, 사회적금융기관 설립/육성
- (유승민의원 안, '16.10 발의) 발전기금 조성, 경제원에 위탁, 위원회 소속 기금심의소위
- (강병원의원 안, '19.3 발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과 민간 사회적경제 중개기관 지정, 사회적금융기관은 금융위 감독대상 기성 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로 한정, 정부는 출자 & 민간은 투자조합 결성 가능

○ 윤호중 의원 안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과 운영분리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운영은 사회적금융기관들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실험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 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의 출자·용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용자, 온랜딩, 용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용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용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 유승민의원 안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2.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3. 정부의 출연금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4. 민간의 자발적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u>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u>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병원 의원 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4장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제22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지원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제23조(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이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⑥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투자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다.**

※ 고려사항 2. 법인 유형별 사회적금융

가. 주식회사

-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0.5억원 필요) 을 등록하거나 펀드운용사 등록(최소자기자본 1억원, 전담인력 2인 이상) 가능

○ 대부업 등록해 직접대출 (대부업법)

- (사례) ‘비플러스’¹⁾ 는 두 개 주식회사로 법적 분리를 하여 운영
 . 대주 : (주)비플러스소셜대부 (금감원-1511, P2P연계대부업)
 . 플랫폼사업자 : (주)비플러스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만 대부업 가능
 . 유효기간은 3년이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이 필요

○ 펀드운용사²⁾ 등록해 직접 투융자 (자본시장법)

- (사례) 와디즈, 한국사회혁신금융, 크레비스
 .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회사로 ‘18년 12월 펀드 운용사 등록
 . ‘한국사회혁신금융’은 2018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2018년 펀드운용사 등록, 2019년 액셀러레이터를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한 바 있음
- 설립이 전문사모펀드 운용사³⁾보다 용이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 설립요건 : 자기자본 1억 이상, 전담인력 2인 이상
- (운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결성 및 운용
 . (펀드목적)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 (투융자 방법) 펀드 결성 후 2년 내에 주목적 사업에 50% 이상 투자 가능하며, 투자한 기업에 한하여 직접대출이 가능

2.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출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의 2/3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하며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 초기창업자⁴⁾에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가능함

○ 조합원 소액대출⁵⁾ (협동조합기본법)

- 조합원의 상호보리증진을 위해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 한도내에서 소액대출(상호부조 포함)⁶⁾ 가능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이자율은 정관으로 따로 정하고, 별도로 회계처리
-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금 지급사유 및 한도 등은 정관으로 따로 정하고, 별도 회계처리
- 다만, 2018년 서민금융진흥원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금융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융자수행기관의 법적형태로 인정하지 않음
- 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의 30% 이내에서 주식회사를 포함한 타 법인에 출자가 가능
- 다만, 투자업 등 금융업으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통한 직접 투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비플러스는 서울지역 예비사회적기업 (2017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설립요건은 10억원 이상

4)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기업)

5) 기획재정부 인가 필요

6)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대상은 조합원에 한정

- (주)한국사회혁신금융, 크레비스, MYSC, HGI 등 소셜벤처 육성 기관
- (등록대상)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이 가능
- (등록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함
 -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 액셀러레이터 활동 명시
 - (예시) 초기 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전문보육의 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자와의 제휴, 초기창업자 홍보, 초기창업자 해외진출 지원, 창업지도 및 교육, 경영컨설팅 및 상담 등
 - 임원이력서, 출자자 명부
 - 납입자본금 (최소 5천만원 이상) 증명서류
 - 상근 전문인력⁷⁾(2인 이상)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
 - 창업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투자대상 및 방법)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 대상으로 선발 및 전문 보육을 전제로 직접 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액셀러레이터로 세제혜택(배당수익, 투자금 양도차익등에 대한 면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각각 최소 1천만원 이상, 3개월이상 집행해야 함
 -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반기별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정기 및 수시검사에 응해야 함
- (개인투자조합⁸⁾) 출자총액 1억원 이상, 조합원수 49명 이하, 업

무집행조합원인 액셀러레이터의 출자지분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운용할 수 있음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는 반드시 초기창업자에게 100% 투자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인 액셀러레이터는 동 개인투자조합에 99%까지 출자지분을 가질 수 있음
-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중 일반법인은 49%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개인투자자로 모집해야 함⁹⁾
- 개인투자조합의 실무적 조성규모는 약 10~15억원으로 초기보육 투자 지원후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로 해당 지분 매각하여 투자회수¹⁰⁾

3.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투자 및 대출¹¹⁾, 출연 및 공제사업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음

- (직접투자한도¹²⁾) 의결권 있는 주식취득은 5%(또는 10%)¹³⁾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5% 초과시에는 무의결권 주식만을 취득할 수 있음
- (사례: 사단법인) 신나는조합, 사단법인PPL,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공제사업단)
- (사례: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아름다운재단, SK행복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열매나눔재단

7) 상근 전문인력 요건은 실질적으로 창업벤처캐피탈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한정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벤처법) 제 13조에 근거

9)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488 유선전화 확인

10) 대전소재 Coworking 공간 운영사인 유한회사 컴퍼니에이(042-867-0319) 유선확인

11)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융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벤처법) 제 13조에 근거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주식 취득 10% 이하 가능조건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하여

정원각 상임이사(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차례

I.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개요

II. 클러스터, 사회혁신파트 등에 대한 경과

1. 한국 사회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와 고민
2. 사회혁신파크에 대한 준비
3. 사회혁신타운 준비과정

III.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 논의에 대해

IV. 클러스터 일반(산업클러스터)

1. 배경과 필요성
2. 유래
3. 클러스터 의미와 이론
4. 혁신클러스터의 개념
5. 혁신클러스터의 기대효과
6. 사례
7. 국내외 클러스터의 성공에서 받는 시사점과 교훈

V. 사회혁신 클러스터

1. 도입
2. 사회혁신 클러스터란
3. 사회혁신클러스터 국내외 사례
4. 서울혁신파크 조성과정 현황
5. 서울혁신파크의 함의

VI. 경남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1. 정의
2. 필요성
3. 목적과 역할
4. 경남의 준비 과정
5. 경남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방향과 기능
6. 경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내용(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덧붙임 1.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설문 조사 결과

덧붙임 2. iCOOP생협은.....구례에 클러스터를 만드는가?(중에 일부)

I.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개요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으로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79(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사업규모 ; 부지 10,985.3㎡(3,323평), 연면적 10,070㎡(3,046평)
- => 리모델링 및 증축(동남전시장 내 본관 8,450㎡(2,556평), 관리동 1,620㎡(490평)
- 사업비 ; 280억원(국비, 지방비 각 140), * 지방비 분담 ; 도, 창원시 6:4

동남전시장 매입 현황

- 위치 ; 동일 / 소유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매입대상 ; 부지 17,042.2㎡(5,155평), 건물 연면적 6,944.58㎡(2,100평)
- 매입방법 ; 동남전시장 시설구역 중 본관, 관리동, 동관 부지 및 건물 매입
 - ▶ 도(본관, 관리동) : 사회적경제혁신타운(동남아트센터, 사회서비스원, 경제진흥원)
 - ▶ 창원시(동관) :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 ▶ 산단공(서관) : 복합문화센터
- 매입기간 ; 4년간(2019~2022)
- 소요금액 ; 238억원(도 143억원, 창원 95억원) ⇒ 혁신타운 156.5, 콘텐츠코리아랩 81.5
- * 연간 매입비 : 59.5억(도 35.72, 창원시 23.75)

□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 통과 : '18. 5. 18.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선정 : '19. 4. 10.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 '19. 5. ~ 6.
- 부지 현황측량, 감정평가, 석면 조사 : '19. 6. 28.
-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 신청(산업통상자원부) : '19. 7. 2.

□ 향후 계획

- 건물 정밀 안전진단, 석면 제거 : '19. 7월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 '19. 7월

II. 클러스터, 사회혁신파트 등에 대한 경과

1) 한국 사회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와 고민

- 노무현 정부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와 검토 ;
- 아이쿱생협의 클러스터
 - ◆ 2007. 12 : (사)iCOOP생협연대-충청북도, 괴산군 클러스터 투자협약(MOU) 체결
 - ◆ 2008. 8 :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 ◆ 2011. 6 : 전남 구례군 용방농공단지 투자계약(MOU) 체결식
 - ◆ 2011. 10 : 구례자연드림파크 기공식(10/25)
 - ◆ 2012. 6 : 아이쿱라면 준공식(6/1)

2) 사회혁신파크에 대한 준비

- 2014년 서울시 도시형 사회혁신파크 검토
- 2015년 6월 오픈

3) 사회혁신타운 준비과정

- 2016년 3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연구원이 공약으로 제안하고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이후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변경)가 논의에 참여하면서 아젠다가 됨
-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립의 필요성을 문제인 후보에 제시하고 문제인 후보가 받음.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 전북지역만 아니라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추진하되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있으므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함.
- 2019년 3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공모사업 공지

III.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 논의에 대해

-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또는 혁신타운)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 조직들의 사업과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클러스터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임.

- 사회적경제가 경제와 사회 두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자본기업’과 달리 ‘경제적 생존과 함께 사회적 목적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적인 것’임.

- 한편, 사회적경제에서 경제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며 사회적 목적은 경제 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가 다른 **자본기업** 경제와 차별성을 갖는 정체성을 제공함.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에서 경제 사업과 사회적 목적은 동시성을 가짐.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류 경제에서 추진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함께 이해해야 함.

- 산업클러스터는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음. 하지만 사회혁신클러스터는 서구에도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2015년 서울혁신파크를 그 출발로 보고 있음.

- 서울혁신파크가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혁신에 방점이 있다면 아이쿱생협의 구례자연드림파크, 괴산자연드림파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등 사회혁신의 성격보다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 협업을 위한 클러스터에 방점이 있음. 한편, 자연드림파크는 제조업만 아니라 농업, 문화, 서비스, 교육, 주택, 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안적 삶을 지향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는 주류 경제의 산업클러스터와 사회혁신 클러스터에 대해 살펴보고 둘의 장점을 취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지향해야 함. 이 글에서는 먼저 주류 경제에서 진행한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후에 사회혁신클러스터를 살펴 볼 것임. 이 두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의 방향, 내용을 점검하고자 함.

IV. 클러스터 일반(산업클러스터)

1. 배경과 필요성

-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농업만 아니라 수공업도 생산과 생활이 같은 공간이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졌으나 매뉴팩처, 기계 공업, 산업 혁명 등을 거치면서 대항화, 분업화, 전문화 등으로 인해 생산과 생활의 공간이 분리, 멀어졌음.

- 생활과 분리된 생산은 다시 조사연구, 기업지원서비스, 관련 산업, 인재 육성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 되어 분산되었는데 국경을 넘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음. 한편 산업의 분야 그리고 노동자 임금, 기술 숙련 등에 따라 분리, 분산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한 곳 또는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특정 분야에서 관련 산업, 지원 산업 등의 기업, 기관들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 효율을 높일 필요도 있음.

2. 유래

-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1890년 산업지구라는 개념을 제시함. 마샬이 제시한 산업지구는 전문화된 작은 규모의 여러 동일기업들이 특정한 지리 공간에 모여 있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통해 기업 간의 물류비용, 거래비용 감소, 전문 분야의 노동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고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기술의 학습과 전파를 용이하게 하여 잠재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된다고 함.(정태인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중에서)(마샬이 1919년 ‘산업과 교역’에서 제시했다는 주장도 있음)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산업지구인 에밀리아로마냐는 1) 전통적인 공예기술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 2) 유연적 생산기술과 생산방식을 접합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 3) 기업들의 공동체와 주민들의 공동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 이는 공동체 내의 신뢰가 단순히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필수적 요인이며 주민들의 동의,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함.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의 산업지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클러스터와는 조금 다름. 즉, 산업지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지역 주민의 삶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 성장과 함께 그 지역의 가치와 문화 역시 고양되어야 함.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상호성의 원리가 경쟁의 원리를 제약하는 상태.(정태인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중에서)

- 혁신 클러스터의 전형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라는 명칭은 1970년대 초 이후 이 지역이 반도체와 컴퓨터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붙여진 별명임. 하지만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 첨단산업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1930년대. 당시 스탠포드대 공과대학에 재직하던 터먼교수가 능력 있는 졸업생들이 동부로 유출되어 지역과 대학의 발전이 정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졸업생들의 기업설립을 장려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터먼교수의 조언에 따라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된 기업이 바로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HP이다(강현수·김륜희 역, 2006)(혁신클러스터의 이론과 사례, <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2007)

- 도시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소피아안티폴리스는 국제적인 휴양지로 외부인을 환대하는 개방적인 문화와 지중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장점. 이러한 환경 덕분에 단조로운 도심의 오피스와 연구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현대의 연구 개발자, 엔지니어, 기업체 임원들이 이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 도시의 산업 분포를 보면 IT와 비즈니스서비스 및 생명공학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교육과 환경 분야임. 1960년대 대학교수의 기고를 받아들여 80년대 초까지 준비와 형성기를 거쳐 형성됨.(혁신클러스터의 이론과 사례, <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2007)

- 이 외에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위해 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고 있음.

3. 클러스터 의미와 이론(혁신클러스터의 이론과 사례, <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2007 중심으로 정리)

- 클러스터는 포도송이 뜻하는 용어로 특정한 산업, 관계 기관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함. 즉, 공급업체, 금융기관, 연관 산업 그리고 전방 산업분야의 기업(유통업체나 구매자 같은), 보완제품의 생산업체, 전문화된 기간시설 공급업체 등과 전문화된 교육, 정보, 연구,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관(대학, 연구기관, 직업훈련원 등), 공인된 표준화 기관, 관련 행정기관, 협회, 클러스터에 참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협의체 등이 한 지역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정보교류, 공동 기술개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생산성, 효율 등을 높이는 것.

- 베카티니(Becatini)는 산업지구를 ‘제품생산과정을 여러 단계로 분리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영역적 체계’로, 스포르자이(Sforzi)는 ‘특정산업으로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의 집적체’로 정의. 사벨(Sabel)은 산업지구를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된 마샬의 산업지구’와 ‘대기업들이 조직의 각 부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재구성된 지역생산 네트워크’로

구분. 1990년 포터(Porter)는 관련 기업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개발, 지방정부 등이 복합된 산업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발전.(정태인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중에서)

- 한편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했음. 마샬이 이야기 한 산업지구, 에밀리아로마냐의 클러스터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등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혁신의 핵심인자, 기관의 역할,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 사회문화에 대한 시각, 혁신주체간의 관계유형, 외부환경과 관계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됨.

혁신클러스터 관련 이론

	산업지구론	혁신환경론	산업공간론	지역혁신체제	학습지역이론	혁신클러스터
혁신의 핵심인자	공통가치 체계 속에서의 혁신 주제 능력	다른 구성주체와의 관계를 통한 기업의 혁신능력	연구개발투자 신생산업식의 적용(JIT등)	상호작용하는 연구개발의 누적 과정	지역혁신체계와 동일; 기술과 제도의 진화 강조	대내외적 네트워크 경쟁과 협력
기관의 역할	사회적 규범 적용, 혁신과 발전 촉진	기업, 대학, 공공기관의 역할 중시 지역중시	기업 간 거래의 사회적 조정자	조직 내부와 외부의 행위 규제	지역혁신체계와 동일; 기관 역할 강조	네트워크 연결
지역개발에 대한 관점	공간적 유대감, 산업지구의 유연성 강조	협조적 혁신 분위기	사회적 규제와 생산체제 간 상호작용	지역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규제 시스템	기술과 사회제도의 이중적 동학	지역의 경쟁우위가 중요
사회문화에 대한 시각	기업 간 가치 공유 신뢰와 호혜	신뢰와 호혜	사회적 작용과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경제와 사회문화생활과의 상호작용	기회주의 방지
혁신주체간의 관계유형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과 협력	수요 공급과 파트너 기업 전략적 관계	기업 간 거래 관계	네트워크는 상호 학습의 조직형태	네트워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외부환경과의 관계유형	환경변화는 제약과 동시에 아이디어 제공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적 재생산	내부관계와 외부제약의 균형	지역혁신체제와 동일	환경변화에 민감
자료: Moulaert and Sekia(2003)의 논의를 일부 보완 <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2007						

4. 혁신클러스터의 개념(<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중에서 정리)

- 클러스터에 혁신을 더한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란 특정 분야의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group) 혹은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클러스터의 개념을 분해하면, (1) 지리적 집중, (2)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존재, (3) 특정

분야에의 특화, (4) 기업과 기관의 연계, (5) 혁신에 대한 강조로 나눌 수 있음.

- 지리적 집중(geographical concentration)은 클러스터 개념의 출발점.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면 일단 기업과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모여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너무 적으면 시너지가 발생하기 어렵고 너무 많이 모이면 지가와 임대료가 높아지고 교통 혼잡 등이 발생.

-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기업, 단체, 조직 등을 보면 완성품 생산업체와 서비스 업체를 비롯한 전문화된 원재료나 부품, 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 금융기관, 연관 산업에 속한 기업 등으로 구성. 또한 클러스터에는 유통업체, 구매자 등 전방산업분야의 기업, 보완제품의 생산업체, 전문화된 기간시설 공급업체와 전문화된 교육, 정보, 연구,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관(대학, 연구기관, 직업훈련원 등), 공인된 표준화 기관, 클러스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기관, 다수의 클러스터는 협회나 클러스터에 참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협의체를 포함.

- 클러스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정분야에의 특화. 클러스터에 모인 기업과 기관들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면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음. 그렇지만 특화가 한 가지의 산업이나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산업이나 기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음. 어느 경우에도 인력, 위치, 역사적 유산 등 클러스터 내에 공통의 경쟁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단순 합 이상의 효과가 발생함.

- 클러스터의 논의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지식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형성 이유이기 때문. 네트워크는 클러스터에 모인 기업과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 단순히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클러스터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움. 클러스터의 논의에서 네트워크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혁신(innovation).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함께 혁신(innovation)이 생존조건으로 부상하자 선진 각국은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임. 클러스터가 일정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혁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knowledge)을 교환하기가 용이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비용과 개발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구성주체들이 있어 기술의 상업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5. 혁신클러스터의 기대효과(<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중에서 정리)

-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공급자, 기업지원서비스, 노동력 등의 투입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관련 기업끼리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수송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 무엇보다 클러스터의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혁신에는 연구개발과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 혁신, 공정혁신, 사업모델 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이 포함됨. 클러스터에서는 기업과 기관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면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에 필요한 암묵적인 지식과 노하우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

- 정보교환 시간의 차이는 개발기간과 품질 차이로 나타남.

6. 사례

1) 일반 기업의 클러스터

(1) 실리콘 밸리: 혁신 클러스터의 원형

- 규모 ; 실리콘 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마테오, 알라메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실리콘 밸리의 총면적은 1,500 제곱 마일이고 2006년 현재 총인구는 244만 명(Joint Venture, 2007).

- 내용 ; ‘실리콘 밸리’라는 명칭은 1970년대 초 이후 이 지역이 반도체와 컴퓨터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붙여진 별명. 실리콘 밸리는 2000년 초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인구와 벤처 투자액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겪었지만, 2004년부터 다시 벤처 투자액이 증가하고 2005년부터는 인구도 다시 증가. IT분야에 집중되던 산업구조는 최근 나노, 에너지, 환경 및 바이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 특징 ; 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실패를 용인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 실리콘 밸리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learning by failing)’는 정신, ② 실리콘 밸리는 자금제공에서도 탁월함. ③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 복잡하고 전문적인 시험, 試作, 생산, 마케팅, 포장, 전시회, 기업로고, 회계, 법률, 헤드헌팅 등을 담당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산업이 발달한 것도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 ④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부품이나 설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신제품이나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2) 스웨덴 시스타: 강소국 경쟁력의 원천, 혁신 클러스터

- 규모 ; 시스타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는 약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스웨

덴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총면적은 200만㎡이며 현재 30만㎡의 확장 작업이 진행 중. 시스타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북서쪽 20km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항으로부터 자동차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

- 내용 ; 무선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강점. 이 때문에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와이어리스밸리(Wireless Valley)’ 혹은 ‘모바일 밸리(Mobile Valley)’로 불리움

- 특징 ; ① 에릭슨의 진출과 유럽표준이 된 GSM방식의 이동통신 기술개발, ② 클러스터의 형성 ; 스톡홀름 시와 에릭슨, 스웨덴 정부가 1988년에 설립한 일렉트룸(Electrum)이 협력지원센터로서 산학협력의 매개체 역할, ③ 스웨덴 정부와 스톡홀름시의 지원 ;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하고 R&D 집중 지원. ④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지역을 관리하는 기업의 명칭을 ‘파크’에서 ‘시티’로 바꾼 데에는 회사가 24시간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관리하겠다는 의도



시스타 전경



시스타 지원기관 - 일렉트룸

(3) 소피아앙티폴리스: ‘혁신도시’의 성공 사례

- 규모 ;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칸과 니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적인 휴양지로 외부인을 환대하는 개방적인 문화와 지중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 전체 입주자 27,000명 중에서 연구개발형 기술기업 종사자가 18,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 분야 9,000명, 학생 5,000명, 순수 연구분야 4,000명

- 내용 ;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업분포를 보면 IT와 비즈니스서비스 및 생명공학, 고등교육 연구, 교육훈련, 보건 생명공학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교육과 환경 분야

- 특징 ; ①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는 양호한 기후 및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점, ② 프랑스 정부의 지방분산 정책과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의 유치노력, ③ 입주기업과 전문가간의 커뮤니티 활동도 요인으로 다양한 클럽활동이나 모임이 활발하게 전개

(4) 도요타시타: 세계 최강의 제조업 클러스터

- 규모 ; 도요타시(豊田市)는 일본 열도 중앙에 위치한 아이치현(愛知縣)에 속해 있는 클러스터로, 현청 소재지인 나고야시로부터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 내용 ; 도요타시에는 도요타 자동차 본사와 7개의 조립공장 및 도요타중앙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음.

- 특징 ; ① 도요타의 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② 다양한 식교류 네트워크의 형성도 중요한 성공요인

2)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1)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볼로냐 ;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과 협력

- 규모 ;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은 협동조합이 매우 활발한 곳 중 하나로 이탈리아의 약 4만 3000여 개의 협동조합 중 1만 5000여 개가 에밀리아로마냐에 있음.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 20개 주 중 하나로 이탈리아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곳으로 면적이 약 22만Km2, 인구는 430만 명 정도.

- 내용 ; 에밀리아로마냐에는 9개의 현이 있는데 각각에 특화된 산업지구가 존재. 카르피는 섬유 및 의류 산업지구, 모테나와 레지오 에밀리아는 세라믹 및 농기계 산업지구, 라베나는 신발 산업지구, 리미니는 목재생산기계 산업지구, 폴리 세세나는 실내장식과 가구 산업지구, 파르마는 식품 산업지구, 페라라는 바이오메디칼 산업지구, 볼로냐는 포장기계 산업지구로 유명. 우리로 치면 도를 이루는 각 시와 군에 각각 서로 다른 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

- 특징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함. ① 풍성한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 ;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강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은 기업가 정신에도 익숙하여, 노동조합은 기술변화와 구조조정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 '왜 노동자는 가치 자체를 새롭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가치 중에서 임금의 몫을 늘리는 데에만 온 몸을 받쳐야 하는가?' 한국에서라면 반동적일 수 있는 이런 의문이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닌. ② 지역 정부의 지원과 법제화 ;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화도 많은 영향을 미침. 1947년 제정된 바세비법(Basevi law)에서는 협동조합의 비분리자산(비분할자산)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983년 비센티니법(Visentini law)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인수 보유하는 것을 인정, 1992년에는 모든 조합이 이윤의 3%를 각출해서 협동조합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함. ③ 네트워크 안팎에서 오는 위기 ; 산업기술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쇄성을 강한 인문학의 휴머니즘 전통이 극복, 최대 노동조합인 CGIL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도 노력. ④ 뿌리 산업과 관련 산업 공존 ; 농업 산업지구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 주위에는 우유팩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우유팩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함께 존재하여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음. ⑤ 선도기업과 지구그룹(district group) 공존 ; 선도기업이란 새로운 기술과 체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변화하는 기업이고 지구그룹은 몇 개의 중소기업들이 법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주식의 교차소유를 통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것임. 이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와 유연성 있는 체계라는 산업지구의 특징 유지

(2) 몬드라곤 ;

- 규모 ;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에 약 8만 명의 노동자, 280개의 협동조합과 자회사가 있음.

- 내용 ; 다양한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연구개발협동조합 등)이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음, 개별 사업체의 경영정보를 협동조합 본부에 제출하고 인력 재배치에 동의, 조합원 교육, 신규사업 투자, 손실보전 연대기금 등의 기금에 참여

- 특징 ; ① 교육을 중요시 여김 ; 1900년초 바스크 '이카즈도라(학교)' 운동, 1943년부터 13년 교육 후 1956년 파고르 회사 출발, ② 기술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사구시 ; 몬드라곤 대학도 공과대 먼저 만들. 호세 신부 "이념은 우리를 가르치고 사업을 우리를 뭉치게 한다", ③ 협동조합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 노력 ; 사업자금 어려움, 관리능력 인재 부족, 기술과 경영 예측 능력 부족, 노동 관리, 과학적이고 조직적 시스템 부족, 성급한 환상 부작용 등의 극복, ④ 지도층과 경영진의 높은 자질 확보 위해 노력, ⑤ 노동금고가 큰 역할 ; 자금 확보와 경영 능력 지원, 감독 등, ⑥ 상호부조와 복지 강화로 노동자 조합원 안정

7. 국내외 클러스터의 성공에서 받는 시사점과 교훈(<균형발전 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 중에서 정리와 추가)

1) 시사점

- 다양한 경로를 통해 클러스터 형성 ; (1) 민간기업 주도형 - 도요타시나 시스타, (2) 대학 선도형 - 실리곤 밸리 (3) 지자체와 정부 등 공공이 주도 - 소피아 앙티 폴리스와 중관촌 등

- 클러스터의 규모에 따른 다양한 명칭 - 밸리, 파크, 시티 등의 다양한 명칭. 특히,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초기 파크의 명칭을 시티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생산만 아니라 생활 공간까지 관리하고자 함.

- 지역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형성 ; 지역의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매출과 수익을 내야 함.

- 정부/지자체-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체제 ; 성공적인 클러스터들의 공통적 특성은 산학연관의 협력임. 개발 초기부터 함께 참여

- 탁월한 교육 및 생활환경 구비 ; 기업에 일하는 종업원과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게 살 수 있어야 함.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 장기 지속적인 추진 ; 대부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함. 특

히, 다양한 구성 주체들의 협치 구조와 문화 매우 중요함.

- 유의점 ; 클러스터는 자급자족의 완결 구조가 아님, 지역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근 지역, 국내외 다른 지역과 연계. 폐쇄적이 아닌 개방형.

- 해외 성공 사례의 주의점 ; 처음부터 완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은 것임. 그러므로 성공 시점이 아닌 초기 시점에 대한 관심 중요.

2) 교훈

-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기업, 행정, 지원조직,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조직들의 연결 네트워크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함.

- 수요자 지향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해야 함. 개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파악하는 일 병행

- 발굴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자금 등 지원 자금을 확보한 것이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요인.

- 통합정보망(e-cluster) 구축 ;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오프라인의 교류, 만남의 장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정보 구축 중요.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 각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업의 추진을 해야 함.

V. 사회혁신 클러스터(“2018년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3차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제 내용 중심으로 정리)

1. 도입

- 산업클러스터는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을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단지를 형성하여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사회혁신클러스터는 해당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흐름들은 현재의 사회적 위기가 좀 더 근원적이고 복합적인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 시장은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생태위기를 가속화.

- 국가 역시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으로 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해법이 이전과 달라야 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사회혁신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밀착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시도하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문제해결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음.

2. 사회혁신 클러스터란

- 흔히 혁신 클러스터라고 하면 산업집적단지를 이룸.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연관기업들이 지리적 집적, 집중을 통해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협업하는 클러스터

- 사회혁신 클러스터는 이와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별적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적 협업이 가능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사회혁신 클러스터는 혁신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높여나가는 구심점을 만들자는 의미.

- 서울시에서는 혁신가들의 활동공간, 중간지원조직들의 입주공간, 다양한 지원단체들로 2015년부터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집적단지, 코워킹스페이스 등이 만들어져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구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

3. 사회혁신클러스터 국내외 사례

1) 아이쿱생협 자연드림파크

- 규모 ; 전라남도 구례에 약 6만 평의 구례자연드림파크 형성, 가치의 구현이나 소비에 동의하는 생산-이용자를 위한 집적단지

- 내용 ; 소비자협동조합 식품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자들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이 식자재 생산부터 가공, 유통,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의 부지에 식품가공·생산 공방, 물류센터, 식당,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주택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복합 문화단지.

- 특징 ; ① 가격, 품질, 마케팅, 운영 등의 경쟁력 확보, ② 관광, 체험형 산업단지로 신 부가가치 창출, ③ 아이쿱생협이 제시하는 대안적 삶의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고자 함.

2) 헤이그라운드

- 규모 ; 소셜 벤처, 비영리 기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체인지 메이커’들의 플랫폼으로, 약 6,000㎡(1,800평),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신축 건물 내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각종 편의시설 조성

- 내용 ; 2017.7월 문을 열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 사회혁신 기업가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 아쇼카, 글로벌 임팩트 투자기관 디쓰리쥬빌리(D3Jubilee) 등 중간지원 성격의 기업들을 포함하여 총 43개 기업 500여 명이 입주해 활동 중임

- 특징 ; ① 단순한 공간 공유에 그치지 않고 입주사들 간 자발적 협업을 통해 구성된 모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플랫폼 역할, ② 각 분야 전문 프로보노 그룹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입주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어지며 헤이그라운드만의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3) 중국의 항저우시 드림타운(기업 주도)

- 규모 ; 중국 전역에 2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기숙형 창업시설인 유플러스(YOU+) 항저우 지점이 드림타운 내에 위치함. 300여개 기업이 1,000억 위안의 기금을 조성해 3년간 만든 드림타운에는 1만여 명의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있으며, 드림타운 측에서는 창업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창업자들의 성공을 돕고 있음

- 내용 ; 항저우 창업마을로 불리는 드림타운은 단순 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아파트, 운동시설, 구내식당, 카페 등을 갖춘 주거형 창업 공동체임

- 특징 ; ① 목적의식이 같은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일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의 가능성을 극대화, ②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공급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줄임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임

4) 미국 보스턴시 “시포트 혁신 구역”(공공 주도)

- 규모 ; 토마스 메니노 전 시장(1993-2014)이 2011년 보스턴 남부 워터프론트 지역

(1,000acre=1,224,174평)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개발에 착수함

- 내용 ; 조성 초기에 메니노 시장은 스타트업을 위해 110개 이상의 기업과 200명 이상의 멘토를 보유한 조직이 시포트에 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일했음. 또한, 시 정부와 시장은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제약회사인 버텍스 제약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했고 이와 같은 노력은 이 지역에 매우 큰 활력을 불어넣음.

- 특징 ; 보스턴 시에는 거점이 될 만 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인재와 자원이 모여들도록 함

4. 서울혁신파크 조성과 현황

- 최초의 혁신 집적지: 서울혁신파크는 국내 최초로 조성된 혁신가들의 집적공간이자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 주체들의 아이디어가 창출·숙성·확산되는 ‘혁신의 구심’을 표방

- 2015년 4월 조성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공식 개소하였으며, 지리적 인접성을 높여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상호교류와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국내 대표 사회혁신클러스터로 자리매김

- 사회혁신 집적단지로서 서울혁신파크 역시 개별 입주단체의 역량이 성장하고 서로의 자원을 연결·공유·교환하며 이렇게 다져진 힘과 에너지가 탄탄한 기반을 이루어 더 많은 혁신 주체들이 모여들도록 하고, 상호 융합·협력하도록 하는 혁신의 집적효과가 발현하는 공간 조성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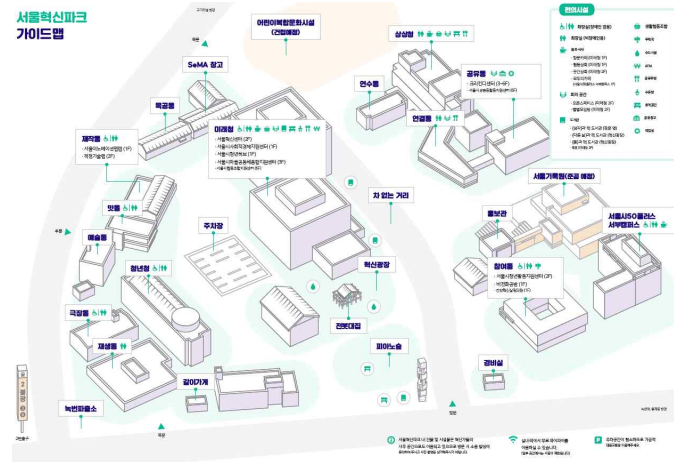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분야별 현황

(중간지원조직 및 국제단체 제외, 2018. 8. 7. 기준)

분야 \ 단체	계	서울혁신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미대인사 사무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미래청		상상청 및 공유청	중소 건물				개별 사무실	코워킹 사무실
		개별 사무실	코워킹 사무실							
문화·예술	74	14	14	4	1	35	-	-	2	4
교육·컨설팅	63	23	9	3	2	10	2	-	3	11
환경·생태·에너지	17	5	-	1	4	1	1	-	4	1
제조·생산·유통	16	7	3	3	2	1	-	-	-	-
네트워크 지원	14	4	1	1	1	-	-	5	2	-
건축·공간	11	5	-	1	1	3	1	-	-	-
복지·인권	8	4	-	3	-	1	-	-	-	-
IT	12	2	1	2	-	5	1	-	1	-
미디어	3	2	1	-	-	-	-	-	-	-
기 타	18	1	2	3	1	2	4	-	5	-
계	236	67	31	21	12	58	9	5	17	16

- 2018.8월 현재 서울혁신파크에는 236개의 입주단체를 비롯하여 입주단체들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11개의 중간지원조직,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3개의 국제단체가 ‘파크 주민’으로 함께 살며 활동하고 있음. 17개 동 건물, 공원과 광장, 옥상 사용

※ 서울혁신파크 공간배치도 (2018.8월 기준)



5. 서울혁신파크의 함의

1) 어려움

- 가장 큰 혼선은 ‘선 조성, 후 입주’가 아니라 ‘선 입주, 경과적 조성’으로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수정하면서 초래된 혼선이 심했음.

- 40여년 정도 경과한 건물 상태가 활동단체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이런 조성 과정이 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원인이 됨.

- 물리적 조성 이전에 활동을 통해 필요한 것을 도출해보려고 한 시도가 유의미하긴 했지만, 경과적 조성이라는 혁신적 방법, 활동주체들과 결합해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수정 계획은 행정적, 절차적 어려움을 겪었다.

2) 서울혁신파크의 함의

- 첫째, 거버넌스의 중요성 인식 ; 행정과 활동단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사이의 능동적인 결합 및 융합적 설계가 필수적. 특히 사회문제가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점에서도 이런 협력은 중요하고, 외국의 사회혁신 사례는 복지나 돌봄서비스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학습조직으로 자리잡아야 함. 활동단체들은 각각 아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성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행을 통해 학습하고 측정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함. 사회혁신이 고립된 실천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다수의 참여가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당연함. 이를 위해 학습과정, 워크숍 과정 등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운영.

- 셋째, 플랫폼 조직으로 전망을 삼아야 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결이 필요한데 정책적 연결, 자원의 연결, 사람의 연결을 위해서는 내외부를 연결하여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생성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집적 단지로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정보 공개, 공유공간, 미디어 관련 공간 등 일정 장치도 필요하지만,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설계, 다양한 사건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기획 등을 세심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함.

- 넷째, 장애를 함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함. 사실 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이 혁신이라는 과감한 도전, 탄력적 운영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를 위해 민간역량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행정과 민간 사이에 조정과 조율은 계속 파생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남음.

- 이를 위해 초기 설계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과단성 있는 리더십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혁신의 시행착오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며, 실적이 아닌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운영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사회혁신 클러스터는 공간이 아니라 운영원리에서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운영의 세부안을 위한 논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VI. 경남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1. 정의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클러스터의 성격과 사회혁신을 위

한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가짐.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란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 조직이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여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교육, 공동 사업 등을 통해 사업적 성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확산, 실현하는 것.

2. 필요성

- 경남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주류 경제의 중심 지역이었으나 조선업의 몰락과 기계, 제조업의 위기로 기업의 파산, 실직자 증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양극화, 노동시장에서 배제를 가져와 사회 갈등 증대와 사회 통합을 저해함.

-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취업유발 효과), 고용안정(높은 기업 생존율), 유휴인력 활용이라는 경제적 역할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한편 경남은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현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함.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와 관련 기업을 육성하여 노동자 배제와 양극화 등을 극복하는 포용 사회를 이루어야 함.

- 이와 같이 경남이 처한 현실은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준비와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즉, 경남에 절실한 사회통합, 포용사회라는 미션에 비해 그 미션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조직의 역량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

- 이러한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가 대두되고 있음. 즉,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조직(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연관 기업(사회적경제 소매금융, 컨설팅 등)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3. 목적과 역할

- 경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목적은 절박한 경남의 경제 현실과 사회적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사회 안전망,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포함하고 지속 가능하고 이해 관계자 참여적인 방식으로 경영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배제가 아닌 통합,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사회의 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것.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가 가지는 장점과 사회혁신클러스터가 가지는 장점을 함께 취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회적 가치의 확산, 사회혁신의 방식을 수행을 해야 함. 즉, 경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클러스터 역할에 다음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함.

- 첫째,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보다 산업클러스터가 가지는 장점인 공동 조사연구, 기술개발과 공유, 마케팅과 판로지원, 협업교육, 대면적 정보 교환과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 창업,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하는 것임.

- 둘째,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사회혁신을 위한 역할로서 과거 국가와 시장 또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던 방식을 넘어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업, 협치하는 것과 사용자와 공급자의 동시성, 기술적 융합 등이 모두 포함됨.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꾸준히 나오고 확산, 전파하는 역할.

- 셋째, 사회적가치의 확산인데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의 향상을 통해 배제가 아닌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임. 이는 주민 간 교류 확산,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독려·지원하는 것임.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사회적 가치의 확산, 사회혁신의 시도 등이 개별적, 복합적, 융합적, 협력적으로 이루어짐.

4. 경남의 준비 과정

1) 도지사 권한 대행 시기

- 경남은 전 도지사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이후 권한 대행 체제로 도정이 진행되었는데 권한대행 이전에는 독자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은 거의 없었고 중앙 정부의 사업을 매칭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그 결과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과 성과가 가장 낮은 편에 속했음.

- 권한대행의 도정에서는 과거 경남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그 대표적인 것이 2018년 4월 문을 연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임. 이는 6월부터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함. 다음으로 ‘경남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이 2018년 6월 이루어짐.

- 경남과 비슷한 경제 위기 지역인 전북에서는 군산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과 제안이 민간에서 시작되고 전북도가 함께 협치의 방식으로 진행함. 이러한 준비와 노력은 ‘서울시 혁신파크’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로 응용 추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채택.

- 전북과 함께 경제 위기 지역인 경남도 이 모델을 고민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동참하는 준비를 시작함.

2) 2018년 민선 제7기 출범

- 2018년 6월 선거 후인 8월 초, 경남도인수위원회에서는 경남 도정 4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조례 개정과 사회적경제과 설치),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협의회와 중간지원조직 참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공공구매, 판로지원, 인증제도 등),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임.

- 2018년 8월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구성하여 4개의 미션 진행. 경남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개정,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민간이 운영할 준비,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콘텐츠 준비, 경남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작성 등

-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방식의 전환 ; 경남도나 창원시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에서 도시 재생, 리모델링 방법으로 전환, 경남도청과 테크노파크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민간과 협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

-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등 협의체들,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남광역자활센터,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등 중간지원조직, 창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의, 양산시사회적경제협의회의, 김해시사회적경제협의회의, 진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의, 통영시사회적경제상생네트워크 등과 미팅을 통해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의견 수렴

- 포럼(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통해 서울의 경험자, 전북의 진행자, 도의회, 민주노총,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함.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314개의 의견 수렴 정리

- 도청의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5. 경남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방향과 기능

- 제1차 5개년 계획의 비전은 ‘협치의 경남 사회적경제’, 4대 목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Scale-up’, ‘굿 커뮤니티 기반 생태계 조성’, ‘균형과 조화의 사회적경제’, 5대 과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경제 전략 수립’,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 ‘세대별, 분야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임.

- 제1차 5개년 계획의 5대 과제의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경남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이 있고 이 클러스터에는 지리적 공간과 건축물로 구성된 하드웨어 요소와 정책과 사업적인 소프트웨어 요소가 함께 있음.

- 그러므로 경남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추진 방향은 경남 사회적경제 제1차 5개년 계획을 근거로 함. 계획이 시행되는 중에 클러스터는 건축물은 완성됨. 경남사회적경제 클러스터는 제1 ~ 제3차 계획이 끝난 후에도 남는 건축물. 장기적으로는 경남의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수 있어야 함.

- 경남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간 기능과 공간의 운영 원칙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공간의 기능을 보면 첫째, 경남사회적경제 기업, 협의회, 지원조직,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 집단, 관련 조직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협치를 하는 **거버넌스 공간**, 둘째, 실험하고 창업하고 만들고 조직(단일 조직, 네트워크 등)을 엮는 등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창조 공간**, 셋째, 교육, 토론, 훈련, 체험, 힐링 등을 통해 사람을 성숙시키는 **성장 공간**, 넷째, 지식, 정보, 대면 관계 등 나누고 주고받는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다섯째, 다양한 문화, 언어, 경험, 지식, 이론 등이 **융합하는 공간**. 여섯째, (인식, 자원 등)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공간**.

- 공간의 운영 원리는 첫째, 규칙, 원칙은 늘 함께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의 원칙, 둘째,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영, 셋째, 제도를 위한 경직된 원칙이 아니라 인간, 구성원을 살리는 운영, 넷째, 운영에는 내부자 참여가 중심이 되지만 외부에도 열려 있는 개방적 참여 운영, 다섯째,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운영, 여섯째, 다른 생각, 사상, 이론, 문화 등이 융합하는 운영, 일곱째, 외부에 알리고 확하는 운영 등(서울혁신파크는 공간보다 운영을 강조)

- 경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는 청년들의 실패할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실리콘 밸리), 도

시 주민의 참여와 소통(에밀리아로마냐) 등을 최대한 보장

6. 경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내용(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72.8%), **창원 거주 응답자 85.3%로 긍정적임**. 입지 조건에는 창원시나 창원시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 혁신타운 내 지역 청년활동가들을 위한 공간과 지원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창원에 있는 조직일수록 혁신타운 입주에 긍정적이고 혁신타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무용, 매장용, 생산용 순으로 선호함.

- 혁신타운에 입주할 때 상주 인원의 규모는 업체 당 평균 상주 인원은 4.2명 수준으로 예상됨. 한 업체 당 필요한 공간은 평균 21평, 보증금은 평균 1,968만 원, 월세는 평균 64만 원을 선호함.

- 입주 시설 가운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교육장, 중소회의실, 휴게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작업소, 체력단련실, 시제품 제작실, 숙박시설, 대회의실, 대강당 순으로 응답.

- 혁신타운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마케팅 및 홍보 기획 교육’,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팝플렛 및 리플렛 제작’, ‘시장조사 및 분석’,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지원’, ‘기업 간, 시군 간 네트워킹 지원(사회적경제 포털 구축 등), ‘경영진단능력(노무, 재무/회계) 향상 교육’, ‘제품홍보 영상 제작 및 개선 지원’, ‘애로기술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순서로 응답.

- 마지막으로 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활성화’, ‘관로개척’,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공간 확보’의 순서.

덧붙임1.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설문 조사 결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클러스터) 관련 설문 조사 결과

I. 조사 개요

1. 정리 내용 :
 -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혁신타운 관련 문항에 대한 정리.
 - 일부 문항에서는 창원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통계 처리함.
2. 조사 기간 : 2018년 11월 1일 ~ 2019년 1월 18일
3. 조사 대상 : 경남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의 이사장 또는 경영자 등 대표자들
4. 표본수 : 마을기업(66), 자활기업(28), 사회적기업(110), 협동조합(87) 기타(8), 표기 오류(15) 등 전체 314 / 창원 거주 응답자는 문항에 따라 72 ~ 78명 사이
5. 전체 응답자 314명 중에 응답을 하지 않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표본 제외하고 통계 처리

II. 요약 정리

1. <표1>,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혁신타운과 같은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입주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72.8%(198명)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27.2%(74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가운데에서는 85.3%(64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여 약 12.5%가 더 높았다.

2. <표2>, 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입지 조건에는 56.2%(146명)이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다음으로는 ‘주변 기업 지원 기관들이 집적된 공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4.6%(90명)였으며 어디든 관계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9.2%(24명)이었다. 창원에 거주하는 응답자들도 접근성(48.6%), 주변 기업 지원 기관들의 집적된 공간(43.1%)의 순서로 응답했으나 차이는 줄어들었다.

3. <표3>, 혁신타운 내 지역 청년활동가들을 위한 공간과 지원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8.3%(154명)으로 많았고 ‘공간은 제공하되 지원 프로그램은 별개로 해야한다’가 23.9%(63명), 공간과 지원을 모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7.8%(47명)이었다. 창원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답변들도 비슷하다.

4. <표4>, 혁신타운이 조성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41.2%(115명)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58.8%(164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창원에 거주하는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약 11.1%가 더 많은 51.3%(40명)가 ‘예’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혁신타운의 위치가 창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현실과 지역 유대라는 특징을 가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현실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표5>, 혁신타운에 입주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입주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48.7%(57명)은 사무용으로 27.4%(32명)는 매장용 그리고 15.4%(18명)은 생산용 이라고 응답했다.

6. <표6>, 입주할 때 상주 인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1~5명이 85.2%(92명)로 대다 수를 차지했고 6~10명은 11.1%(12명), 11명 이상은 3.7%(4명)으로 응답했다. 응답을 한 업체 당 평균 상주 인원은 4.2명 수준이었다.

7. <표7>, 입주할 때 업체 당 필요한 공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2.3%(58명)이 20평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10~20평은 27.0(30명), 5~10평이 19.0%(21명), 5평 이내가 1.8%(2명)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 전체 평균은 한 업체 당 21평 정도로 나왔다.

8. <표8-1>, 입주할 때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증금이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33.3%(29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0만원~1000만원으로 23.0%(20명), 500만 원 이하가 19.5%(17명), 1001만 원에서 3000만 원이 12.6%(11명), 4000만 원 에서 1억 원까지도 11.5%(10명)이 되었다. 보증금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 고 산출한 평균 보증금은 1,968만 원이었다.

9. <표8-2>, 월 임대료는 평균 64만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26.9%(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1 ~ 100만 원이 19.4%(18명), 31 ~ 50만 원이 18.3%*17명)을 이었으며 없음으로 한 사람도 17.2%(16명)이 되었다.

10. <표9>, 입주시설 가운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교육장(67명), 중 소회의실(56명), 휴게실(44명), 공동판매장(40명), 공동창고(39명), 공동작업소(33명) 체 력단련실(31명), 시제품 제작(22명), 숙박시설(21명), 대회의실(20명), 대강당(16명)의 순 으로 응답했다.

11. <표10>, 혁신타운에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중복 선택 가능)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136명), ‘마케팅 및 홍보 기획 교육’(125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82), ‘팝플랫 및 리플릿 제작’(75명), ‘시장조사 및 분석’(72명), ‘제품 디자 인 개발 및 개선 지원’(72명), ‘기업 간, 시군 간 네트워킹 지원(사회적경제 포털 구축 등)’(68명), ‘경영진단능력(노무, 재무/회계) 향상 교육’(67명), ‘제품홍보 영상 제작 및 개 선 지원’(62명), ‘애로기술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62명), ‘온라인 플랫폼 구축’(60명), ‘시제품 제작 지원’(52명)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12. <표11>, 마지막으로 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1~3순위)에 대해 1순위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60명)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이 ‘판로개 척’(42명),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36명), ‘공간확보’(33명)의 순서였다.

III. 빈도분석(일부 문항 창원 별도로 통계)

<표1>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동의 여부

문19. 혁신타운 조성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입주하여 활동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응답자 전체				
	표본수		표본수		
예	198	72.8	64	85.3	
아니오	74	27.2	11	14.7	
합계	272	100.0	75	100.0	

<표2> 혁신타운 조성 입지 조건

문20. 다음 중 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입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응답자 전체				
	표본수		표본수		
접근성	146	56.2	35	48.6	
주변 기업지원기관들이 집적화된 공간	90	34.6	31	43.1	
어디든 관계없음	24	9.2	6	8.3	
합계	260	100.0	72	100.0	

<표3> 혁신타운 내 청년 활동가 참여

문21. 혁신타운 내 지역 청년활동가를 위한 공간과 지원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전체 응답자		창원거주 응답자		
	표본수		표본수		
좋다고 생각한다	154	58.3	43	58.9	
공간을 제공하되 지원프로그램은 별개로 해야한다	63	23.9	20	27.4	
별도의 공간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7	17.8	10	13.7	
합계	264	100.0	73	100.0	

문22. 귀사의 주요 생산 또는 판매 품목은 무엇입니까? ; 별도

<표4> 혁신타운 입주 의사

문23. 혁신타운이 조성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응답 내용	전체 응답자				
	표본수		표본수		
예	115	41.2	40	51.3	
아니오	164	58.8	38	48.7	
합계	279	100.0	78	100.0	

<표5> 혁신타운 입주 이유

문24. 다음 중 어떤 이유로 혁신타운에 입주하고자 하십니까?			
응답 내용	표본수		
사무용	57	48.7	
매장용	32	27.4	
생산용	18	15.4	
기타	10	8.5	
합계	107	100.0	

<표6> 입주 할 때 상주 인원

문25. 입주 시 상주 인원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 내용	표본수		
1 ~ 5	92	85.2	
6 ~ 10	12	11.1	
11 이상	4	3.7	
합계	108	100.0	
업체 당 평균 상주 인원	4.2명	평균 상주 인원은 구간으로 범주화하기 전에 개별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함.	

<표7> 입주 시 필요한 공간 면적

문26. 입주 시 공간의 면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응답 내용	표본수		
5평 이내	2	1.8	5평으로 산출
5~10평	21	18.9	7.5평으로 산출
10~20평	30	27.0	15평으로 산출
20평 이상	58	52.3	30평으로 산출
합계	111	47.7.0	
업체 당 평균 희망 평수	21평		

<표8-1> 입주 시 적절한 보증금

문27-1. 입주 시 평당 임대료(보증금)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표본수		
없음	29	33.3	
500만 원 이하	17	19.5	
501만 ~ 1000만	20	23.0	
1001만 ~ 3000만	11	12.6	
4000 ~ 10,000만(1억)	10	11.5	
합계	87	100.0	
업체 당 희망 보증금 규모	1,968만 원		

<표8-2> 입주 시 적절한 월세

문27-2. 입주 시 임대료(월세)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표본수		
없음	16	17.2	
1 ~ 9 만원	9	9.7	
10 ~ 30 만원	25	26.9	
31 ~ 50 만원	17	18.3	
51 ~ 100 만원	18	19.4	
100 ~ 300 만원	6	6.5	
300 만원	2	2.1	
합계	91	98	
업체 당 희망 월세	64만 원		

<표9> 공동 공간으로 필요한 시설

문28. 입주시설 중 공동공간으로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가능)		
응답 내용	표본수(순위별 정리)	
교육장	67	
중소회의실	56	
휴게실	44	
공동판매장	40	
공동창고	39	
공동작업소	33	
체력단련실	31	
시제품 제작	22	
숙박시설	21	
대회의실	20	
대강당	16	
기타	4	
총 합계	389	중복응답

문29. 입주 시 필요한 장비는 무엇입니까? : 별도

<표10> 혁신타운에 필요한 지원사업

문30. 다음 중 혁신타운에 필요한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중복체크 가능)			
구분	주요사업	표본수	비고
건설	단계별 맞춤형 건설지원	8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136	
금융지원	신용보증지원	40	
	클라우드 펀딩 기법 등 지원	18	
교육	경영진단능력(노무, 재무/회계) 향상 교육	67	
	마케팅 및 홍보 기획 교육	125	
	프리젠테이션 작성 및 발표 지원	18	
	엑셀러레이터 혹은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제공	16	
기업지원	애로기술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62	
	시제품 제작 지원	52	
	시장조사 및 분석	72	
	기술공유 체계 구축 및 사업 전환 지원	29	
	국제협력사업 지원	19	
마케팅	사회적경제기업 데모데이(특정일을 기준으로 생산품 홍보, 판매)	45	
	오프라인 매장 구축	46	
	온라인 플랫폼 구축	60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35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46	
	해외 1:1 매칭 수출상담회 지원	15	
	홈쇼핑 스튜디오	19	
	팝플렛 및 리플렛 제작	75	
	제품홍보 영상 제작 및 개선 지원	62	
R&D	기술개발 및 R&D사업화 지원	44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지원	72	
창업	(팀)창업 활동 및 창업 지원	24	
	사회혁신 프로젝트 및 소셜벤처 지원	39	
공동작업실	이노베이션 펌랩(Fab Lab) 지원	27	
네트워킹	공동사업(컨소시엄) 신규 개발 및 자원 연계	43	
	기업 간, 시군 간 네트워킹 지원(사회적경제 포털 구축 등)	68	
기타	기타 지원사업 ()	9	

문31. 위의 세부항목 중 시급하게 요청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표11> 혁신타운 기대효과

문32. 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 수		표본 수		표본 수	
네트워크 활성화	60	25.6	34	14.7	42	18.4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36	15.4	63	27.2	28	12.3
공동생산 및 공동기술개발	17	7.3	31	13.4	30	13.2
판로개척	42	17.9	50	21.6	34	14.9
공간확보	33	14.1	12	5.2	37	16.2
랜드마크로써 상징성	18	7.7	6	2.6	22	9.6
기타	3	1.3	2	0.9	0	0.0
무응답	25	10.7	34	14.7	35	15.4
합계	234	100.0	232	100.0	228	100.0

덧붙임2.

iCOOP생협은 왜 자본도 농민도 떠나는 구레에 클러스터를 만드는가?

정원각 대표(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1. 들어가면서 - 한국 사회에서 지역(지방)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 1) 인간은 공간이라는 지역의 제약을 받는 존재
 - 2) 공간이라는 제약을 넘어선 자본
 - 3)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본은 지역을 이윤 추구의 장으로 여김.
 - 4) 한국 역사 속에 중앙집권으로 인한 지방 소외
 - 5)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받는 정부의 지역 사회 포기로 인한 붕괴
2. 삶의 터전으로 더 악화되는 지방 현황(중앙과 지방)
 - 1) 인구의 변화
 - 2)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 3) 농업 현황
 - 4) 금융권 예금 잔액 비중 현황
3. 지자체와 거버넌스
 - 1) 거버넌스의 의미
 - 2) 한국 사회에서 거버넌스 돌아보기
 - 3)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하여
4. 협동조합에서 지역이란?
 - 1) 지역은 조합원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토대
 - 2) 1980년 제27차 ICA 총회에서 채택한 레이들로 보고서와 지역
 - 3) 협동조합의 제7원칙과 지역
5. 아이쿱생협에서 지역(지방)이 가지는 의미
 - 1) 다른 생협과 역사적으로 다른 이행 경로
 - 2) 비수도권 지역, 지방은 아이쿱생협의 뿌리
 - 3) 아이쿱생협의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4) 아이쿱생협의 지방 활성화 정책의 성과
6. 괴산과 구례의 현황

- 1) 인구의 감소
- 2) 재정 자립도의 악화

7. 아이쿱생협의 클러스터

- 1) 클러스터 추진 배경
- 2) 클러스터 전체 비전
- 3) 괴산 클러스터
- 4) 구례 클러스터
- 5) 아이쿱생협이 추진하는 클러스터 특징과 작동방식 그리고 핵심목표
- 6) 지자체와 아이쿱생협 협력 사항
- 7) 구례군 지역사회 내 고용현황 및 법인별 매출현황

8. 이후 과제

- 1) 정리
- 2) 과제

7. 아이쿱생협의 클러스터

1) 클러스터 추진 배경

- 아이쿱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대자본의 참여에 대해 대비함.
- 가공식품 제조, 연구실, 물류 센터 등을 묶어서 효율을 높임.
- 가공 식품의 원부재료를 원활하게 조달하고 관리
-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거점 지역 개발.

2) 전체 클러스터 비전

<표12> 클러스터 사업의 비전

추가가치	· 나와 이웃과 자연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 윤리적 생산의 항구적 실천기반의 구축
최종목표	·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생산과 소득의 보장 · 생태적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 생활과 자연이 어울리는 생태적 생협밸리 완성

3) 괴산 클러스터

(1) 개요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체부지 6,132,250㎡(약 185만평) 중 약 19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는 40여개의 친환경식품 가공업체가 입주할 예정.
- 또한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과수단지, 생태마을, 목장단지, 연못, 야생초 화원, 허브농장, 학교, 병원 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약 30만평 규모의 생협밸리가 조성
-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약 100만 평 이상의 수목림은 그 자체를 이용하여 삼림욕 등 에코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사용.

(2) 추진현황

-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iCOOP생협과 지방정부(충청북도, 괴산군청)간 투자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부지 매입, 클러스터추진위원회 출범, 산업단지계획안(수립),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2011년 2월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를 받음
-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경과.
 - ◆ 2007. 12 (사)iCOOP생협연대-충청북도, 괴산군 클러스터 투자협약(MOU) 체결
 - ◆ 2008. 8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 ◆ 2010. 1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주요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 ◆ 2010. 3 ~ 7 클러스터산업단지계획(안) 수립(자문회의 4차 시행)
 - ◆ 2010. 7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 ◆ 2011. 2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고시
- ◆ 2013. 4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보조진입도로 착공

4) 구례 클러스터

(1) 개요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대를 중심으로 전체 부지 149,336㎡(약 4만5천 평) 규모로 조성되는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는 20여개의 친환경식품 가공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9월 기준 1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
- 단지 내 체험장,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친환경식품 판매장, 카페, 휘트니스센터, 영화관 등의 문화복합 시설과 생태마을이 조성되어 450여명의 단지 내 근무인원과 연 10만 명 이상의 조합원 및 외부 방문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전망, 농촌 지역사회의 주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

(2) 추진현황

- 본 사업은 2011년 6월 구례군과의 투자협약(MOU) 체결 후 용방농공단지 부지를 모두 분양받아 12월 (주)아이쿱라면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현재, 10여개의 공장 및 지원시설이 준공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다.
- 추진 경과
 - ◆ 2011. 6 : 구례용방농공단지 투자계약(MOU) 체결식
 - ◆ 2011. 10 : 구례자연드림파크 기공식(10/25)
 - ◆ 2012. 6 : 아이쿱라면 준공식(6/1)
 - ◆ 2012. 9 : 통합관리동, 물류센터 준공(9/11), 아이쿱양조 착공(9/12)
 - ◆ 2012. 10 : 물류센터 개소식(10/5)
 - ◆ 2012. 11 : 아이쿱양조 준공(11/21)
 - ◆ 2013. 1 : 친환경쌀 제분공장 착공(1/1), 게스트하우스(2동) 준공(1/3)
 - ◆ 2013. 10 : 게스트하우스(1동) 준공(10/7)
 - ◆ 2013. 11 : 조합원 투어
 - ◆ 2014. 4. 4: 그랜드 오픈(전체 오픈 예정일)

5) 아이쿱생협이 추진하는 클러스터 특징과 작동방식 그리고 핵심목표

(1) 전체공단의 단일형 설계 -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및 완성품 보관창고, 전처리 시설 등을 공단전체에서 구축. 또한 제조업체는 생산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마케팅, 위생, 시설보수, 인력조달, 제품개발, 디자인, 세무회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축

(2) 원부재료 통합관리로 가공과정에서의 혼입 방지 - 생산물(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농산물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생산유통인증 관리를 하고, 클러스터에 입고된 원부자재 • 완성품은 생협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판매장 및 가공업체에 공급

(3) 농민과 가공생산자, 소비자의 공동투자와 운영 -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되는 비용(2,000억 원 이상)을 세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하고, 특히 1차 생산자들은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iCOOP생산자회-1차 생산자 조직) 제조업체에 공동투자 하여 이후 안정적인 농외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4)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친환경산업단지로서의 롤 모델 - 산업단지 내 자연생태와 경관의 항구적 보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단 내 폐수를 재활용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

(5) 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주거문화와 결합 - 한국사회는 수도권 지역에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아 일자리와 교육 • 문화 시설도 집중됨. 그러므로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산업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대안적 삶의 모델'을 제시

(6) 독자생산 • 독자유통 • 독자인증시스템 구축 및 강화 - 클러스터 사업은 일관된 생산 • 가공 • 유통 • 체험관광의 연계시스템을 한 곳에 모아서 안전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원료유실의 최소화, 핵심설비 공유를 통한 중복투자 개선, R&D 활성화를 통한 '프리미엄' 상품개발 등을 촉진시킬 것. 이를 통한 독자생산 • 독자유통 • 독자인증시스템 구축 및 강화

(7) 생산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신뢰 강화 - 집적효과를 통한 생산 경쟁력의 향상(생산원가의 절감)과 일관된 원부자재 관리와 체험 관광을 통한 높은 신뢰도의 브랜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1차)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 받게 됨으로서 서로가 협동하고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6) 지자체와 아이쿱생협의 협력

(1) 괴산군과의 협력

- 클러스터가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괴산군청, 괴산군의회, 충청북도가 협력.
- 클러스터의 기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군청이 협조
- 괴산의 불정농협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협력함.
- 자연드림 이매점 매장 보증금 괴산군 지원
- (재)아이쿱씨앗재단을 통한 괴산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후원
- 괴산군 내 칠성면민의 날 행사 후원
- 괴산군 지역축제(고추축제) 후원

(2) 구례군과의 협력

- 구례군에서 농공단지 전체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 구례군청과 군의회에서 아이쿱생협의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섬.
- 산지유통센터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 농업 정책 자금을 군과 아이쿱생협이 협력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함.
- 구례군이 우리밀축제 행사를 지원
- 입주하는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제공
- (재)아이쿱씨앗재단을 통한 구례군 장학금 지급
- (재)아이쿱씨앗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 후원

- 구례군 내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직장을 제공하여 구례를 떠나지 않도록 함.
-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례에 근무할 때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 주거 그리고 임금 등을 지원

7) 구례군 지역사회 내 고용현황 및 법인별 매출현황

(1) 구례 클러스터에서 고용현황(2013년 9월 기준)

<표13> 지역사회 고용 인원 현황 조사(9월 기준)

업체명	고용 인원(명)	업체명	고용 인원(명)
아이쿱라면	14	쿠파이커리	15
쿠파푸드시스템	20	울곧은	7
쿠파서비스	11	아이쿱양조	2
쿠파도우	30	합 계	

(2) 구례 클러스터 매출 현황

<표14> 구례 클러스터 매출 현황

업체명	생산품목	매출액(백만원)		
		2012년	2013년 9월	합 계
아이쿱라면	우리밀라면	1,800	2,547	
쿠파푸드시스템	가루식품류	13,535	16,847	30,383
쿠파서비스 케이크	케이크류	318	507	824
쿠파도우	생지, 만두류	3,545	3,774	7,319
쿠파이커리	빵류	2,390	1,504	3,895
울곧은	한과, 약과류	817	612	1,430
아이쿱양조	막걸리	0	140	140
합 계		22,405	25,931	48,337

8. 이후 과제

1) 정리

- 1차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이 이루어지므로 조합원은 지역을 근거로 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됨
-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 즉, 중앙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이루어져 왔음. 더구나 현대에는 군사정권이 32년 동안 독재를 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가 더 해져 중앙,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졌음. 그 결과 중앙(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음.
- 그러므로 오랜 중앙집권과 독재의 잔재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즉, 지방의 지역 사회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함.

- 아이쿱생협은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생산자, 직원, 경영진 등 모든 주체가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인 것을 인식함.
- 특히, 아이쿱생협은 중앙 조직부터 시작한 생협이 아니고 지역 생협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한 협동조합으로 지역은 아이쿱생협의 더 큰 의미가 있음.
- 아이쿱생협은 공정무역 물품을 제외하고 국내산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 특히, 비수도권에서 생산하고 있음.

2) 과제

- 아이쿱생협은 현재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도록 기여하고자 함.
- 비수도권, 지방은 아이쿱생협의 소비자 조합의 사업과 활동의 근거지이자 생산지이므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에 생협,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사람과 조합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에서 필요한 것인데 과거에는 자본기업에 의존하던 다양한 과제들을 협동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짐.
- 특히, 자본도 버리고 농민도 고향을 떠나는 인구 과소 지역에 사람이 돌아오고 그 돌아온 사람이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시장만이 아니라 가능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이쿱생협은 인구 과소 지역, 지방에서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협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산의 확보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문화센터 등과 같은 물리적 자산이 공공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이는 아이쿱생협이 물리적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도 있고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
- 아이쿱생협은 2011년 구례 클러스터 기공식 때 선언한 바와 같이 인구 과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환원하여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함.
- 지역 사회에서 생협, 협동조합의 사업적 성과가 사회적 과제 해결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자치, 민주주의 확산과 정착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 활동가들이 노력하고자 함.

9. 구례 클러스터의 의미와 역할

1) 의미

- 아이쿱생협이 추진하는 독자 생산, 독자 유통, 독자 상품 즉 한국 나아가 세계에 아이쿱에만 있는 Only를 눈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

- 정부도 포기한 농업 분야에서 한국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으로 미래를 제시함.
- 한국 사회에서 점차 친환경 사업 영역에 들어오는 대자본과 경쟁, 싸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물적 토대 근거지.
- 자본도 투자를 꺼리고 농민도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땅 구례에 사람이 숨 쉬고 노동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지역 사회로 복원.

2) 역할

- 한국 사회 아니 나아가 세계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야 함. 친환경 농업, 가공 식품 견학 과 체험 그리고 협동조합, 생협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곳.
- 구례 클러스터 자연드림 파크는 아이쿱생협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이어야 함. 내가 이 클러스터의 주인이라는 생각
- 한국 사회에 다른 세상. 즉, 경제의 중심이 돈, 자본이 아니라 인간이야 함을 알고 볼 수 있어야 함. 나아가 인간, 자연 그리고 경제가 순환하고 지속 가능함을 알림.
- 식품 가공 공장이 주이지만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인문학적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느낌,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 구례 클러스터를 다녀와서 “모두가 버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보다 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정관 중에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부분

제정	2013년 4월 26일
개정	2014년 8월 01일
개정	2015년 3월 25일
개정	2016년 3월 15일
개정	2017년 3월 16일
개정	2019년 3월 12일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등 인프라구축 사업
2.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56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부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소액대출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시의 이자율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

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액대출사업 규정

제정 : 2017.4.12.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56조 제6항에 근거해 소액대출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소액대출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액대출사업"이라 함은 조합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청자"라 함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대출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대출승인자"라 함은 대출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출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출자"라 함은 신청자 중 대출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소속단체"라 함은 신청자가 근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연체관리"라 함은 대출자에 대하여 상환원리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약정"이라 함은 대출자로 승인 확정되어 동행과 대출자 쌍방 간의 대출 금액, 대출 조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교부"라 함은 조합과 대출자가 약정을 맺은 이후 대출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대출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합 대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민사회운동과 사회적 금융에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성되며, 대출자 및 대출금액, 대손을 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대출대상

제4조[대출대상]

- ① 조합원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호 외의 조건 및 우선순위는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1. 현재 급여가 연소득 3,600만원이하 또는 건강보험료가 직전 3개월 월 평균 10만원 미만인 자
 2. 소속단체 추천

제3장 대출절차

제5조[대출신청]

- ①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액대출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관 추천서 1부
-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출승인자 선정]

대출승인자는 조합의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7조[대출승인자 선정통보]

조합은 선정된 대출승인자에게 대출내용, 상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승인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소액대출 사업 내용

제8조[약정서의 체결 및 자금대출]

대출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소액대출사업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의거하여 동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을 받는다.

제9조[대출금액 및 조건]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한다.

제10조[대출이율 및 원리금 상환]

- ① 대출금액에 대한 이율은 정관 56조 ④항에 따라 고정금리 연 3%(십원미만 절사)로 한다.
- ② 연체 2개월 이후부터는 대출 원금에 대하여 연 4.5%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③ 대출금액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거치기간 없이 이자와 원금을 월별로 납부한다.

제1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36개월로 하고 약정부터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장 소액대출 사업 심사위원회

제12조[구성]

-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약간 명의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사회운동과 사회적금융에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성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
2. 대출자 선정 및 승인
3. 대출금액 승인
4. 상환유예 및 상환조정 조치에 관한 사항

5. 대손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4조[운영]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대출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대출 승인자를 만장일치로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의 1일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방법]

대출자 선정을 위한 심의는 서류심사를 기초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 면접을 할 수 있다.

제6장 대출결정 통보 및 약정

제16조[결정 통보]

- ① 신청자에 대한 대출 결정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회가 신청내용의 수정 및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대출 신청한 내용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결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약정의 체결 및 지급]

- ① 대출 승인자는 대출이 결정되면 조합이 정하는 기일에 약정서를 구비하여 쌍방 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약정된 대출금 교부는 반드시 대출자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장 연체관리

제18조[연체관리 대상]

- ① 연체관리의 대상은 1회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로 한다.
- ② 연체관리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되 특별한 경우 조합이 정한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연체관리자의 역할]

연체관리자는 대출자의 상환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연체 예방을 위한 업무
2. 단기연체(2회 이하) 발생 시 상환독촉 업무
3. 중기연체(3~6회) 시 소속단체에 상환독촉 안내문 발송 및 면담
4. 장기연체(7회 이상) 시 내용증명 발송
4. 장기연체(7회 이상) 시 법적 대응

제20조[연체관리의 방법]

연체관리는 문자, 이메일, 유선을 통해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출자 및 소속단체 책임자와의 면담 등을 병행한다.

제21조[외부전문가의 활용]

- ①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체관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때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상환조정 및 상환유예]

- ① 상환의지를 가졌음에도 정상적인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월 납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 등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상환조정이라 하며, 또한 같은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대출자의 상환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상환유예라 한다.
- ② 연체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상환조정 및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③ 상환조정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 기간 이내에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상환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 ④ 상환유예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며, 회당 납입 원금에 대한 변화는 없으며, 상환 일정 자체가 해당 기간만큼 연기되는 것을 말하며, 최대 2회까지 상환유예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상환조정 및 상환유예를 위한 면담 시에 대출자는 자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약정의 해지 및 자금의 회수]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출받은 경우
 2. 대출자가 약정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대출자가 연체관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4. 대출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경우
 5. 소액대출 사업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6. 원리금 상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연체 및 고의 연체한 경우
 7. 기타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할 경우 조합은 즉시 이를 대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금의 반환]

- ① 조합이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반환을 결정한 경우 대출자는 2주 이내에 대출금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대출자의 사정에 의한 약정 해지 시, 대출자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기록]

조합은 사업 진행에 관하여 기록을 유지하며, 분기별 대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8장 대손충당금

제26조[대손충당금]

매 대출시 대출원금의 10분의 1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제정 2016.1. 1.
개정 2017.4.12.
개정 2017.8.30.
개정 2018.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동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칙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결혼(이혼), 출산, 암 진단, 사망, 중증장애, 후유장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장애,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에 따른다.
-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이혼	20만원
출산	50만원
사망	최고 3,000만원
암 진단	최고 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고 100만원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②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단,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지급액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사망,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 ① 배우자
 - ② 직계비속(2인 이상 시 연장자순)
 - ③ 직계존속
 - ④ 기타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의 자
-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 ①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 ②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금 청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1. 결혼(이혼),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정첩장 1부

2.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수익자 지정 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3.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4.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5. 중증장애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 1부, 진단서 1부,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각 1부
(지급 후)

6. 간병비 지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영수증

7.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영수증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부칙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